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계속기업에
대한 판단과 보고에 미치는 영향



濟州大學校 大學院

會計學科

許 禮 旬

2006年 12月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계속기업에
대한 판단과 보고에 미치는 영향

指導教授 高成孝

許禮旬

이 論文을 經營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許禮旬의 經營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6年 12月

The Effect of Auditors' Accountability on Going Concern Judgements and Reporting

Ye-Soon Heo

(Supervised by professor Seong-Hyo K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Business Administration

2006.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Effect of Auditors' Accountability on Going Concern Judgements and Reporting

Ye-Soon Heo

Department of Accounting

Th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tilize a descriptive model of belief revision suggested by Einhorn and Hogarth(1985, 1987) in investigating the effect of task variables on the information processing by auditors for going concern judgement and report decisions. Specifically,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order effect based on the degree of accountability. And to test on the effect of auditors' accountability on the probability of existence judgement, two orders of presentation are used ; the two pieces of positive evidence followed by the two pieces of negative evidence(++--), and the two pieces of negative evidence followed by the two positive evidence(--++). The degree of accountability is divided subjects

into two groups; higher accountability (partner, manager, incharge) and lower accountability (staff).

Second, this is designed to investigate review effect based on the degree of accountability. After reviewing, it may reduce the order effect.

Third, this is designed to investigate dilution effect based on the degree of accountability.

The above issues are empirically tested using the field experiment based on a questionnaire method. Different research methodologies are used depending on the types of hypotheses and the purpose of empirical testing. The empirical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cency effect has been found either in a higher accountability group or in a lower accountability group. But, there is no difference on recency effect regardless of the degree of accountability.

Second, review effect has been found either in a higher accountability group or in a lower accountability group. It means that the review effect mitigates the recency effect. But, there is no difference on review effect regardless of the degree of accountability.

Third,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 of accountability among external users and the decision on making going concern reports.

It could be said that this means the change of circumstance of audit. Because of social environment such as bankruptcy of large enterprises and financial statement fraud, they brought reinforcement of estimate responsibility of the management about going concern and auditors' accountability so that the boundary of accountability was extended into all user groups.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동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7
제1절 이론적 배경	7
1. 계속기업의 보고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의 변천	7
2. 감사인 판단에서의 신념수정모형	20
3. 감사인의 보고책임	30
제2절 선행연구	41
1. 계속기업의 보고에 관한 연구	41
2. 감사인 판단에서 신념수정에 관한 실증연구	43
3. 감사인의 보고책임에 관한 연구	52
제3장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56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56
1. 보고책임과 순서효과	56
2. 보고책임과 재검토효과	58
3. 보고책임과 보고상 희석효과	59
제2절 연구방법	60
1. 피험자의 현황	60
2. 실험설계	62
3. 실험설문의 내용과 절차	68

제4장 연구결과와 해석	73
1. 보고책임과 순서효과	73
2. 보고책임과 재검토효과	83
3. 보고책임과 보고상 희석효과	91
제5장 요약 및 결론	94
참고문헌	98
부 록(설문지)	104



<표 목 차>

<표2-1>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에 대한 태도	29
<표3-1>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61
<표3-2> 피험자의 실험집단별 표본 수	61
<표4-1> 정보제시순서에 따른 판단수정	74
<표4-2> 정보제시순서에 따른 추가정보에 대한 신념변화	76
<표4-3>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정보제시순서에 따른 판단수정	78
<표4-4>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정보제시순서에 따른 판단수정	80
<표4-5> 보고책임과 순서효과와의 관계-부정선제시형	81
<표4-6> 보고책임과 순서효과와의 관계-긍정선제시형	82
<표4-7> 순차적 제시방법과 재검토와의 관계	84
<표4-8> 정보제시별 재검토후의 판단변화	85
<표4-9>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내의 재검토효과	87
<표4-10>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내의 재검토후 판단변화	87
<표4-11>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내의 재검토효과	88
<표4-12>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내의 재검토후 판단변화	88
<표4-13> 보고책임과 재검토와의 관계	90
<표4-14>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응답현황	92
<표4-15>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고책임과 보고여부	92

<그림 목 차>

<그림2-1>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	· · · 19
<그림4-1> 정보제시순서에 따른 계속기업존속확률의 평균값	· · · · · 7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동기

경영자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한 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 존속하리라는 전제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를 검토하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의문을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계속기업의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잘못된 감사보고를 할 경우, 투자자와 채권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대기업들의 도산과 분식회계 등 여타사건으로 경제·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커지면서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평가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계속기업가정과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또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은 1999년 국제적 정합에 맞추어 전면 개정되면서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책임은 물론 감사인의 보고책임 또한 더욱 구체화되었다.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계획·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계속기업가정상 적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집한 감사증거를 기초로 감사대상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나 상황에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요한 의문사항이 존재하는 지를 검토하고,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문

에 대한 해소사항을 검토하여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을 판단하도록 하는 순차적인 증거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증거를 판단하는 경우 정보처리과정에서 내재된 특정 과업변수(task variables)¹⁾의 편의(bias)²⁾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릇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Einhorn과 Hogarth(1985)는 정보의 순차적인 처리과정에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신념수정모형을 개발하였다³⁾. 이 신념수정 모형은 확률추론, 의사결정이론, 경제학, 사회적인지, 배심원의사결정, 의사소통과 설득, 태도 변화, 인과관계 추론 및 정신물리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 모형은 감사영역에 있어서도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판단과정 및 보고결정에서 증거의 순차적인 처리과정과 과업변수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한 틀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후 많은 사회심리학연구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요인 중 하나가 의사결정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책임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편의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회계감사기준 개정 이후에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책임과 감사인의 보고책임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시킴으로 인하여 감사

1) 과업변수(task variables)는 감사인이 감사증거에 의한 판단과 보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변수로서 증거제시순서, 가설의 구조, 원초신념의 크기 등으로 연구에 사용하는 독립변수들이다.

2) 정보처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편의(bias)에는 順序效果, 構造效果, 놀람效果 등이 있다.
- 순서효과(order effect)는 증거들의 제시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으로 초두효과(primacy effect)와 최신평과(recency effect)를 들 수 있다. 초두효과는 대인관계에서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먼저 제시된 정보가 최종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최신평과는 나중에 제시된 정보가 최종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 최신평과는 전문분야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소는 ① 나중에 제시된 정보의 회상을 쉽게 하는 특별한 기억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 ② 강한 대비효과를 만드는 환경, ③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상이나 과정에 관한 지식에 의해서 나중에 정보가 다른 시사점을 가질 수 있거나 더 타당하다고 간주될 때이다.
- 구조효과(frame effect)는 원초가설의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계속기업의 존속확률 또는 실패확률의 구조에 따른 판단의 차이를 말한다.
- 놀람효과(surprise effect)는 원초신념의 크기와 추가되는 정보의 내용(공정적 정보, 부정적 정보)에 따른 후속 판단의 차이를 말한다.

3) Einhorn, H. J. and Hogarth, R. H., "Contrast/Surprise Model for Updating Belief,"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hicago, (April), 1985.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계속기업 판단과 보고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들이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단상의 편의를 최소화함으로써 의사결정 성과를 향상시키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다. 만일 감사과정에서도 편의가 발생된다면, 그 편의의 원천과 성격을 연구하는 일은 감사인의 의사결정 도구의 설계,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감사전문가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감사대상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보고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실증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책임(accountability)과 순서효과(order effect)이다.

모든 감사인은 자신이 판단하고 내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감사보고 후,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하급자인 경우에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책임을, 상급자는 감사의뢰인을 포함하여 외부이해관계자집단에 대한 보고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고책임을 "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그리고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등에게 감사대상회사의 감사결과에 대한 해명(결백, 변명, 정당화) 또는 사과(민·형사상의 책임)를 해야 하는 책임의 정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순서효과는 증거제시순서에 따라 서로 판단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즉, 먼저 제시된 정보가 최종판단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게 되는 첫 인상효과로 초두효과(primacy effect)가 있고, 나중에 제시된 정보가 최종판단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최신효과(recency effect)가 있다. 최신효과는 전문가집단에

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편의로 감사인이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최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계속기업의 존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혼합정보에 대해 제시순서(++--, --++)를 달리하여 계속기업의 존속확률을 평가하도록 하였을 때, 순서효과의 존재여부 및 보고책임의 정도(높고 낮음)에 따라 최신효과에 차이가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보고책임(accountability)과 재검토효과(review effect)이다.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계속기업의 존속여부를 판단한 후 보고를 결정하게 된다. 판단과정에서 정보의 제시순서(++--, --++)를 달리한 후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확률을 순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순차적인 판단절차가 끝난 후에 이전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확률을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감사인이 내린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재검토를 행하였을 경우, 정보제시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순서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 여부와 보고책임 정도에 따라 순차적인 정보처리에 의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확률과 재검토를 행한 후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확률에 차이가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보고책임(accountability)과 보고상 희석효과(dilution effect)이다.

희석효과는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투입이 되면서 판단결과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의 특성에 따라 희석시킨 의사결정의 질은 더욱 더 향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감사인은 어떠한 이해관계자집단에게 높은 보고책임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보고를 하는데 영향을 받게 된다. 감사인은 이해관계자 집단간 이해조정과 보고책임이라는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인이 감사의뢰인, 투자자와 채권자,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이 3그룹의 이해관계자중 어떠한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더 높은 보고책임을 인식

하는 가에 따라 계속기업에 대하여 특기사항 기술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연구방법은 계속기업의 판단 및 보고에 대한 행위이론과 관련된 문헌조사를 토대로 현장실험(설문실험설계)에 의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설문지 설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는 각 피험자(감사인)에게 감사대상회사의 기본정보로서 회사의 배경 정보와 재무제표정보를 제공하였다. 우선 배경정보에는 ① 회사의 개요 ② 영업활동내용과 경제적 환경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 및 ④ 과거 3년 동안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⑤ 과거 3개년 동안의 감사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험자의 판단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⑥ 기본 재무비율분석 자료도 첨부하였다. 이상의 기본정보에 입각하여 피험자들에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기초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실험설문은 감사대상회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를 숙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보고책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보고책임의 정도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제2부에서 각 피험자들에게 기초판단을 토대로 4가지의 추가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업의 존속확률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즉 4가지 추가정보 가운데 두 가지 정보는 계속기업에 대한 의문사항(부정적 정보)이며 다른 두 가지 정보는 의문에 대한 해소사항(긍정적 정보)으로서 검토과정에서 순차적인 추가정보의 제시에 따라 각각 기업의 존속확률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제시된 감사대상회사의 기본정보와 추가정보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한 후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확률을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는 재검토과정을 통해 재검토 전후의 존속확률을 비교하여 순서효과가 감소되는 지 여부와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라 존속확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제3부는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특기사항 기술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계속기업에 대하여 보고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자 집단 중 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에 대하여 순위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설문이 설계된 목적은 감사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해관계자 집단에 따라 계속기업에 대한 의문사항의 기술여부가 달라지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는 실험과업으로 이용된 사례회사의 기본정보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5명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설문지는 공인회계사 24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적합한 설문을 제외한 177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통계패키지는 SPSS 12.0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분석방법은 가설의 종류 및 검증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t-test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계속기업의 보고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의 변천, Einhorn & Hogarth의 신념수정 모형, 그리고 보고책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의 설정, 연구방법, 실험설문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제시되었다. 제4장에서는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을 하였으며, 마지막 제5장의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1. 계속기업의 보고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의 변천

1) 계속기업 보고의 중요성

오늘날 경제 환경에서의 기업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실체로 특정 지워진다. 반면에 기업이 도산 등으로 인하여 기본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기업의 실패라고 한다.

이러한 계속기업의 개념은 이론이나 회계실무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 가운데 하나이다. AICPA의 APB Statement No.4에서는 계속기업을 재무회계의 기본적인 특징⁴⁾으로, 국제회계기준 No.1에서는 기본적인 회계가정으로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계속기업가정⁵⁾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기업실체의 중요한 경영활동이 축소되거나 기업실체를 청산시킬 의도나 상황이 존재하여 계속기업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회계처리방법과는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 그 적용된 회계처리방법은 공시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계속기업개념이 없다면 가치평가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에 대한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감사인이 계속기업의 개념을 감사공리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수반되는 감사인의 의무

4) AICPA, "Basic Concept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 Accounting Principle Board Statement No.4, AICPA, 1970, p5.

5) 한국회계기준원,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재무회계 개념체계, 문단 64 "계속기업".

범위가 축소되고 책임회피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계속기업개념이 유효하지 않고 한 실체가 계속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또한 존재한다.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에 문제를 야기 시키는 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⁶⁾.

첫째, 경영상의 불확실성, 즉 시장의 변화 또는 공장시설의 노후화와 기타 경영상의 요인으로 일어나는 재무구조의 점진적인 악화와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상충은 무엇보다도 손익에 악화를 가져오고 현금잔고를 감소시키며, 당기 부채를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시킨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1년 이내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초기단계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시적이고 중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인이 계속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 감사인은 가장 어려운 판단을 해야만 한다. 영업활동에 관한 불확실성의 또 다른 형태는 새로 조직된 기업이 성공을 하지 못하거나 재무구조가 견실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영업상의 불확실성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산의 실현가액에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 전혀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외적인 요인, 즉 기업의 통제범위를 넘어 발생하는 것과 잠재적으로 재무능력을 넘어서 발생하는 것에 기인하여 계속기업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정부의 조치, 강제적인 제품회수결정 혹은 각종 사건 등은 그러한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함에 있어서 해당기업이 존속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며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영업활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경영상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어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감사의 주요문제는 계속성이 의문시 되는 환경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다.

6) 박정대, 박해남, "감사인의 불확실성 예측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16권 제1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p.258.

또 한편으로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으로 인하여 변형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감사의퇴인, 투자자와 채권자, 동료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감사인은 이들 상호간 이해조정과 보고책임에 의해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판단과 보고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때 계속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감사의견의 반영여부에 따라 감사인과 기타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상황은 특정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 중요한 의문사항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보고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퇴인과의 관계악화로 고객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감사대상회사는 자금조달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고객 및 공급처와의 신용을 잃게 되어 계속기업의 문제가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므로 인해 결국에 가서는 파산할 것이라는 자기에언이 실현된다. 투자자와 채권자들에게는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경고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보고의 신뢰성 증대, 사회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 이행 등으로 인하여 감사인의 보고책임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둘째 상황은 특정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 중요한 의문사항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보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회사가 실패했을 경우이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감사대상회사의 투자자와 채권자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부적절한 보고가 부실감사라는 근거를 제공하고, 기업사회에서 회계법인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전문 감사인으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문제, 동료 공인회계사들의 사회적 명예실추, 그리고 외부규제기관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 부적절하게 계속기업의 보고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존속하는 경우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보고결과에 대한 책임을 더욱더 강하게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속기업에 대한 보고는 감사의퇴인, 감사인 및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감사인은 GAAS와 평판 등과 같은

7) 고성효,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과 보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1993, p119-121.

요인 때문에 감사인에게 보고책임을 부여하고, 그 보고책임을 갖고 명백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감사수행으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경영자의 책임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계속기업의 보고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의 변천과정

계속기업가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첫 공표는 1962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에 의해 회계연속통첩(Accounting Series Release : ASR) No.90으로 나왔다⁸⁾. 증권거래위원회의 회계연속통첩(ASR) No.90은 보고일에 해결될 수 없는 회계상 중요성이 있는 거래나 사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한정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한 보고로 보았다. 1962년 이전에는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의 필요성과 그러한 문제에 대해 감사인 개개인에게 신중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회계연속통첩(ASR) No.90에 따라서 미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절차보고서(Statement on Accounting Procedures : SAP) No.33(1963)을 공표하였는데, 재무제표 공개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불확실성 문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감사보고에 비정상적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감사인에게 요청하였다.

「재무제표의 검증」이라는 표제로 회계연속통첩회(ASR) No.115(1970)를 공표했을 때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불확실성의 주제로 삼았다. 여기서 계속기업 재무보고서를 받은 회사는 1933년 증권법에 의해서 대중에게 증권시장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수용하였다. 그러나 일반대중이 등록증권에 대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34년 증권법을 수용하여 계속기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기업의 감사보고를 중요시한 첫 공식적 언급은 회계감사기준서(Statement on Accounting Standards : SAS) No.2(1974)이다⁹⁾. 이 보고

8) Rappaport, L.H., SEC Accounting Practice and Procedure, Third Edition, (The Reonald press Company, New York, 1972)

9) AICPA "Reports on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SAS No.2, AICPA, (1974)

서는 회사가 계속되지 않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인은 기록된 자산의 회수가능성과 부채의 분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한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을 고려하도록 감사인에게 요구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문기관의 입장(SAP No.33, SAS No.2) 표명에도 불구하고, 감사인들은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고책임을 질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특히 감사인책임위원회(1978)는 불확실성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서(SAS) No.2의 보고 요구에 대한 유용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으며, 조건부 한정 의견의 삭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조건부 한정 의견에서 감사인은 불확실성의 보고자이자 해석자가 되어야 하며, 조건부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조건부 한정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위원회는 중대한 불확실성을 부각시키고 정보이용자들에게 불확실성의 평가와 미래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확실성에 대해 주식사항을 추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 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에 대해 커다란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것보다는 재무제표를 수정 또는 공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위원회입장은 감사기준집행위원회(현재 감사기준심의위원회)에 의해 '불확실성 상황에서 감사보고서'란 표제를 가진 공개초안을 촉진시켰다. 그 공개초안의 제안에 따라 불확실성을 FASB No.5의 기준에 의해 공시한다면, 감사의견을 수정하거나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위원회의 공개초안에 대한 공식적 공표는 이 공개초안에 참여했던 정보이용자들이 반대를 함에 따라 연기되었다.

1981년 3월에 「실체의 존속에 의문이 있을 때 감사인의 고려사항」(The Auditor's Considerations When a Question Arises About an Entity's Continued Existence)이라는 제목으로 회계감사기준서(SAS) No.34가 공표됨으로써, 기업의 계속성에 의문이 있을 때 필요한 감사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SAS No.34의 세 번째 문단에 '일반적인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사대상

회사의 계속기업여부에 의심이 갈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감사대상회사가 계속적으로 존속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대상회사의 계속기업에 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없었다. 즉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계속기업여부에 의문이 생기는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만 반대정보와 완화요인 모두를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요소를 고려한 후에도 의문이 남아 있을 때, 감사인은 기록된 자산의 회수가능성과 부채의 분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절차를 통하여 존속의 가정에 대한 회사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책임을 강요하지 않았다. 단, 감사대상회사의 계속기업여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특기사항문단이나 의견문단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보이용자들은 수정된 의견을 받지 않은 감사대상회사가 단시일 내에 도산하게 되면 감사가 실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수정된 의견을 받지 않은 기업이 단시일 내에 도산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감사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다고 보고되고 있다¹⁰⁾. 이와 같은 기업실패에 대한 초기 경고신호로서 감사인의 제한된 역할에 대해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여 회계기준심의회(Accounting Standard Board : ASB)는 "계속기업으로서 실체의 존속능력에 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The Auditor's Consideration of an Entity's Ability to Continue as a Going Concern)이란 제목으로 회계감사기준서(SAS) No.59(1988)를 공포하였다. 여기서는 계속기업에 관한 기존의 SAS No.34를 보강한 것이다. 감사인에게 소극적인 책임만을 부과하였던 SAS No.34와는 달리, 개정된 SAS N0.59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모든 감사에 있어서 감사대상회사에 대하여 계속기업의 가정이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인의 책임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감사대상회사의 계속기업여부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이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책

10) Kennedy, D. B, and W. H. Shaw, "Evaluating Financial Distress Resolution Using Prior Audit Opinion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8, 1991, pp.97-114.

임으로 변화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감사의견을 내었을 경우에 감사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감사인은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SAS No.59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감사증거를 수집하게 되면서 감사대상회사의 계속기업여부에 관하여 감사의견을 수정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회계감사기준서(SAS) No.59는 회계감사기준서(SAS) No.34를 대체하였으며, 다음 세 가지의 주요 관점에서 회계감사기준서(SAS) No.34와는 다르다.

첫째, 회계감사기준서 No.34에서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절차를 통하여 계속기업의 가정에 반대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에 국한하였다. 반면에 회계감사기준서 No.59는 감사한 재무제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동안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실체의 능력에 실질적 의문여부를 평가하도록 감사인에게 요구하였다.(제한적 책임보다 적극적 책임)

둘째, 회계감사기준서 No.59는 자산의 회수가능성과 부채의 분류에 의문이 없더라도 실체의 존속능력에 관한 실질적인 의문이 있을 때,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회계감사기준서 No.34에서는 존속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이 있더라도 감사인에게 보고수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자산의 회수가능성과 부채금액 및 분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셋째, 회계감사기준서 No.59는 조건부 한정 의견을 삭제하고 적정보고서의 설명문단으로 그것을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조건부 감사의견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오해를 준다는 심의위원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이 회계감사기준서 No.59는 감사인이 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실질적 의문을 가질 때, 의문이 야기되는 환경을 설명문단에 부가하여 기술하고 적정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보고기준의 발전과정에서 감사인의 보고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특

히 회계감사기준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보고기준의 발전과정을 1999년 개정 이전과 이후, 2005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개정 이전 회계감사준칙에서는 입증감사절차, 특기사항 그리고 불확실성 존재시 감사의견에서 규정하고 있다.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할 때, 감사 실시과정에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여부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중요한 의문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여부만을 검토할 목적으로 별도의 감사절차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감사의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서 기업의 존속능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2월 개정된 회계감사준칙에서는 계속기업과 관련하여 제 570장에서 40개조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영자와 감사인의 책임(제 3조-제10조), 감사계획서 고려사항(제11조-제16조), 감사절차(17조-제29조), 감사결론과 보고(제30조-제38조)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개정준칙에 의한 계속기업 관련 감사결론 및 보고에서 감사인은 수집한 감사증거를 기초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나 상황에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불확실성이란 감사인이 불확실성의 성격과 영향을 명확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그 잠재적인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적인 판단을 내릴 경우의 불확실성을 말한다.

이때 계속기업의 가정은 적절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만일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졌다면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되 특기사항 문단을 추가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상황에 적절한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이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면 계속기업의 가정을 전제로 작성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 준칙이 구 준칙과 의견표명에 차이를 둔 것은, 감사인은 회사가 계

속기업가정이 타당한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면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계속기업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정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계속기업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이전의 방법보다는 더 감사인의 책임범위를 강화시킨 미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서(SAS) No.59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 및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의 수요는 이미 국제화 되었으며 기업이 생산한 재무정보의 신뢰성 여부를 인증하는 외부 회계감사업무의 중대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제체도의 틀을 지키고 동시에 국제적인 정합성을 지녀 글로벌 스탠다드인 국제회계사 연맹이 제정한 국제감사기준에 맞추고자 2005년 3월에 회계감사기준이 전면 개정되었다. 또한 2005년 7월20일자로 회계감사기준적용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는 종전의 회계감사준칙 중 회계감사기준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감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규범이 아니라 감사인이 기준을 해석하고 실무에 적용하는데 전문가적 판단을 돕기 위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회계감사기준 570에서는 감사의 계획 수립시부터 전 과정을 통하여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 그 수집된 감사증거를 기초로 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계속기업의 가정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다.

■재무적 사항

- 자본잠식 또는 부의 순운전자본
- 만기갱신이나 상환가능성이 없는 차입금의 만기 도래, 고정자산의 취득시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큼
- 채권자 및 채무자에 의한 재무적 지원의 취소 징후
- 과거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의 현금

흐름

- 부실한 주요재무비율
- 중대한 영업손실의 발생, 현금흐름 창출에 사용된 자산의 유의하여야 할 가치의 감소
- 배당금 지급의 연체 또는 배당증권
-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준수 불능
- 대출조건의 준수 불능
- 공급자와의 거래가 신용에서 현금결제조건으로 변경
- 주요 신제품개발이나 기타 필수적 투자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 부재

■영업

- 후임자의 선임이 없이 핵심 경영진이 퇴진
- 주요시장, 프랜차이즈, 면허 혹은 주요 공급자의 상실
- 노사문제의 어려움이나 주요 공급부품의 부족

■기타

- 자본유지나 기타 법률상의 요구사항 불이행
- 회사를 상대로 소송 또는 규제절차가 계류 중이며, 승소하더라도 회사가 이행할 능력이 없는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 회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이나 정부정책의 변화

등이다. 물론 다음의 사례는 모든 사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다음의 사례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이나 상황이 파악된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 570.계속기업의 문단 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① 경영자의 계속기업평가에 근거하여 작성한 향후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 ② 경영자의 향후 실행계획의 효과, 사건이나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기타요인의 효과에 대한 고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수행하여 계속기

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한다.

③ 경영자의 향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경영자확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부채구조의 조정, 지출의 축소 혹은 지연, 증자 등 장래의 계획에 대하여 경영자에게 질문하며, 경영자의 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이러한 계획의 결과가 상황을 개선시켜준다는 것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의문사항의 유의성이 달라질 수 있다.

감사인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간의 문제이다. 만약 경영자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을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면 감사인은 경영자에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까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인은 경영자의 평가대상기간 이후에 계속기업 존속가능성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될 지도 모르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고 있는지 경영자에게 질문을 하여야 하며, 그런 사건이나 상황의 징후가 있는 지를 시사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할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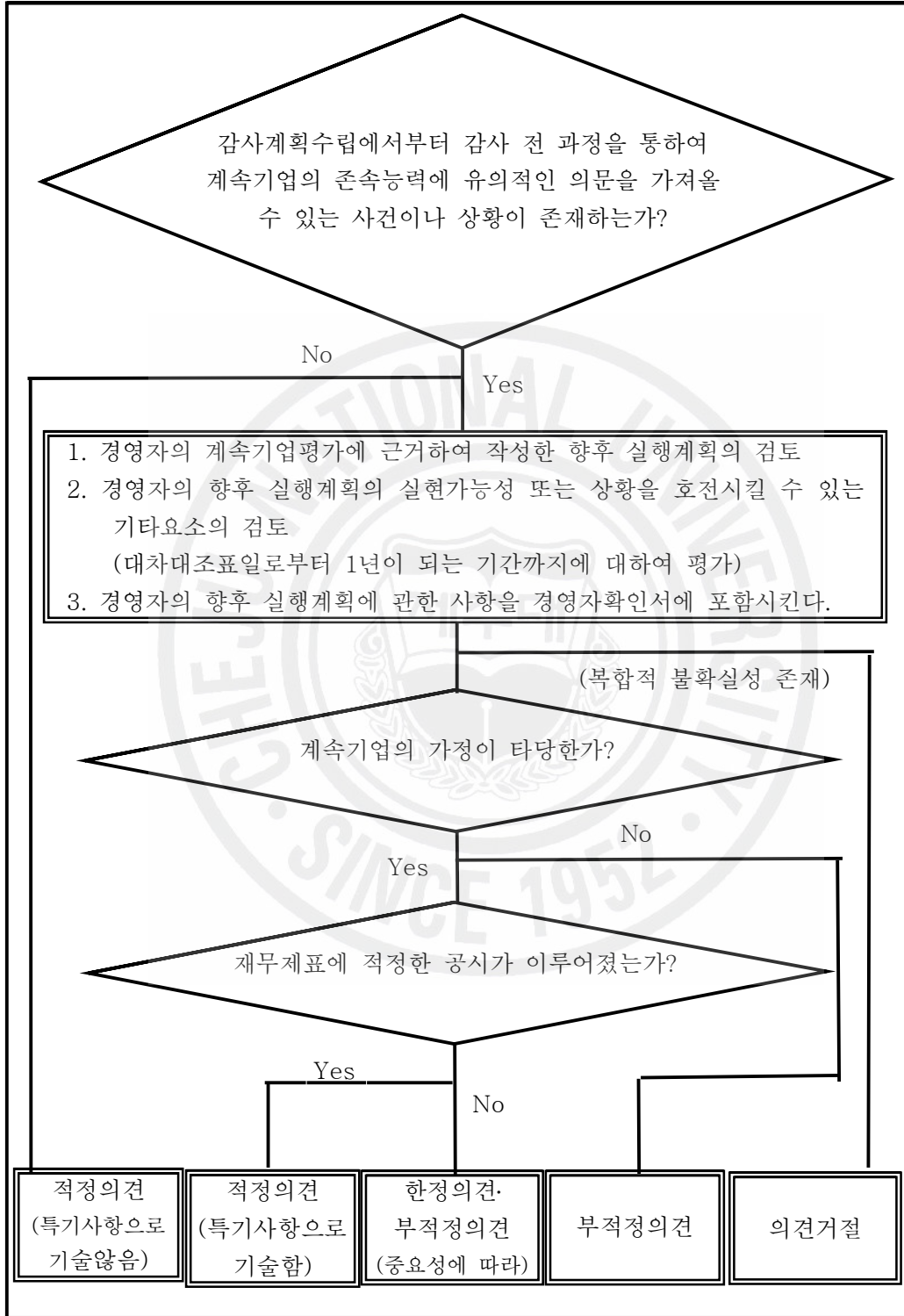
이러한 계획을 평가한 후에도 기업의 존속 여부에 유의적인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관한 주식표시의 적정성 여부와 감사보고서에 반영해야 할 것 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기업가정은 타당하나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이 주식에 공시되어 있는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해 재무제표주식에 적절히 공시가 되어있다면 적정의견을 표명하되 특기사항 문단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속기업의 가정은 타당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이 적절하게 공시되지 아니하였을 때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보아 한정적견을 표명하게 되나, 그 내용과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인이 회사가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면, 재무제표에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기업가정을 전제로 작성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불확실성이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합쳐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감사인은 특기사항문단을 기재하기 보다는 의견거절 감사보고를 표명한다.

회계감사기준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을 흐름도로 요약하면 <그림2-1>과 같다.



<그림 2-1>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 흐름도



2. 감사인 판단에서의 신념수정 모형

1) 행동회계연구

행동회계학분야의 연구는 인지심리학분야 연구와 같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행동회계학 연구의 주요관심사 중 하나는 회계정보시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정보생산자와 이용자들이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와서 회계학에서도 행동심리학 접근방법이 채택되기 시작했고, 1966년 ASOBAT가 행동이론의 방향에서 회계이론을 정립하였다. 이후에 회계학은 정보이용자 지향적인 관점에서 행동과학적 접근방법에 따른 연구가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가시적으로 행동회계연구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행동회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도 현저하게 높아졌다. 이는 일반적인 회계분야에서 부분적으로 행동적 이슈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특히 회계감사분야에 있어서 행동연구의 유용성이 인식된 결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감사인들이 어떻게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할 것인가는 감사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미래에 감사인들을 교육하는데도 역시 중요하다.

1980년대 회계분야에서는 확률판단(probability judgement) 오류, 기능적 고착현상(functional fixation), 대표적 특성에 의한 휴리스틱(representative heuristic)과 초기값 설정 및 조정 휴리스틱(anchoring and adjustment heuristic), 이용가능성에 의한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등 현상이 회계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때의 행동회계학 연구는 회계감사분야의 주제가 주류를 이루었던 추세이다. 1980년대 이전에는 의사결정과정 자체의 설명보다는 의사결정 결과의 오류나 편의현상 발견에 초점을 맞추어졌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 측면에서 의사결정과정의 동질성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동질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 감사인

이라는 점에서 회계감사분야에 행동회계학연구가 집중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규범적 이론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던 의사결정과정의 오류 및 편의현상과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의사결정 환경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매개변수들의 역할과 개인적 차이 등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 또는 매개변수로서 피험자의 경험, 축적된 지식, 인지양식(cognitive style), 과업 특성 등에 연구노력이 집중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회계정보지식의 축적과 전문가의 판단과정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회계감사분야에서의 행동회계연구도 감사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존재하는 매개변수를 파악하는 것과 전문가집단인 감사인의 감사기술 축적과정이 의사결정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 접근방법에 의한 Einhorn & Hogarth (1985,1987)의 모형을 이용하여 계속기업에 대한 판단과 보고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편의를 감사인의 보고책임이라는 요인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Einhorn & Hogarth의 신념수정 모형(Belief Adjustment Model)

Einhorn & Hogarth(1985, 1987, 1990)모형¹¹⁾은 초기값 설정과 조정(anchoring and adjustment) 전략을 포함하여 순차적 정보처리를 하는 한정된 능력을 가진 개인의 단순한 심리학적 메카니즘을 가정하고 있다. 어떤 개인의 현재 신념을 초기값으로 하여 새로이 추가된 정보에 입각하여 초기값이 조정되며,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이를 반복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모형의 강점은 기억하는 일이나 계산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 있다.

11) Einhorn & Hogarth 모형은 1985년의 대조-놀람모형(contrast-surprise model), 1987년의 대조-관성모형(contrast-inertia model), 1990년의 신념수정모형 (belief adjustment model)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들 모형들은 신념수정에 관한 기술적 모형으로서 각기 서로 다른 함수형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동일한 예측을 하고 있다.

Einhorn & Hogarth 모형은 베이스 정리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추가적 정보에 대한 세 가지 특성 즉, 정보의 방향(direction), 강도(strength) 및 형태(type)를 모두 고려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베이스 정리에서 무시되는 정보의 제시순서(order)와 제시방법(presentation mode) 등과 같은 정보의 특징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¹²⁾

(1) 증거의 특성

첫째, 정보의 방향(direction)은 현재 신념의 지지여부이다. 현재의 신념을 지지하는 추가 정보는 정(+, positive)의 정보이고, 그렇지 않고 현재의 신념을 지지하지 않는 추가 정보는 부(-, negative)의 정보이다.

둘째, 정보의 강도(strength)는 현재 신념을 입증(confirm)하거나 반박(disconfirm)하는 정도로서 강(또는 약)한 정(또는 부)의 정보를 말한다.

셋째, 정보의 형태(type)는 일관적(consistent)이거나 혼합적(mixed)일 수 있다. 즉 어떤 정보가 모두 정(positive)이거나 부(negative)일 때는 일관적 정보이고 정(positive)과 부(negative)가 혼합되어 있을 때는 혼합적 정보이다.

앞에서의 정보의 방향, 강도 및 형태는 베이스 모형과 마찬가지로 대조/놀람(Contrast/Surprise)모형에서도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정보에 대한 특성은 추가정보의 제시순서를 고려했을 때에도 결합될 수 있다¹³⁾.

넷째, 정보의 제시순서(order) 및 제시방법(presentation mode)이다. 정보의 제시순서는 약한 정보 다음에 강한 정보를 또는 강한 정보 다음에 약한 정보를 제시하거나, 부의 정보 다음에 정의 정보, 또는 정의 정보는 부의 정보의 다음으로 순서를 달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12) Ashton, A.H., and Ashton, R.H., "Sequential Belief Revision in Auditing,"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88).

13) 만일 의사결정자가 베이스의 정리에 따라 신념수정을 한다면, 그러한 순서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의사결정자의 신념수정에 관한 기술적 모형으로서 베이스정리의 부적절성을 제안한 실질적인 정보가 있다(예 Ashton & Ashton, 1988 등)

그리고 제시방법에는 순차적 제시방법과 동시적 제시방법이 있다. 순차적 제시방법은 정보를 제시할 때마다 한 번씩 신념수정이 이루어지고, 동시적 제시방법은 정보가 동시적으로 모두 제시될 때, 모든 정보에 대한 반응에서 한 번의 신념수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두 방법 중에서 정보의 제시순서는 순차적 처리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

Einhorn & Hogarth(1985)모형은 일관적 증거의 순차적인 제시방법이 동시적 제시방법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은 신념수정을 하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모형에서는 증거회피형인 사람인 경우 순차적 제시방법이 동시적 제시방법보다 더 작은 신념수정을 예측하고 있으나, 증거수용형인 사람은 순차적 제시방법이 동시적 제시방법보다 더 큰 신념수정을 예측하고 있다. 요약하면 이러한 증거에 대한 일반적 태도 때문에 증거회피형은 증거의 인지 또는 주관적 강도를 축소시키는 반면, 증거수용형은 증거의 주관적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정보의 특성들이 신념수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2)대조/관성모형(Contrast/Inertia Model)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감사인의 의사결정은 감사인이 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난 후에 계속기업에 대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후속정보를 이용하는 두 단계의 신념수정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¹⁴⁾

이와 같이 계속기업의 보고에 관한 판단은 회사의 문제 식별과 후속정보에 의한 일련의 신념수정으로 특정 지을 수 있으며, 여기서 각각의 신념수정은 이전 판단의 가중치와 현재 정보항목의 가치로 이루어진다. 최종의 수정추정치는 계속기업의 보고를 하기 위한 최소허용가능주관적신념(minimum allowable subjective belief)과 비교된다, 만일 최종신념추정치가 최소허용가능주관적신념을 초과하면 감사인은 계속기업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계속기업의 보고를 할 것이다.

14) Mutchler,J., "A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Auditor's Going Concern Opinion Decision,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85).

과업변수(task variables)들이 순차적 정보처리과정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자의 신념수정과정에 관한 기술적 모형이 필요하다. Einhorn and Hogarth(1987)는 의사결정자의 계속기업에 대한 판단과 의견결정에서 정보의 순차적 처리과정과 과업변수와 의 상호작용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틀로써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념수정에 대한 기술적 이론을 제안하였다. 그들이 대조/관성 모형이라고 칭한 이 모형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반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이 모형은 순차적 판단과정을 가정하고 의사결정자의 신념수정과정을 순차적 초기값과 조정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기값과 조정전략에 따른 판단은 다음 과정을 통하여 결과에 이른다고 가정하고 있다.

① 초기값(anchor)은 과거경험, 역사적 빈도자료 또는 어떤 기타의 계기가 되는 사건을 기초로 채택한다. 이러한 식별조건을 기초로 하여 의사결정자는 계속기업의 존속가능성의 초기값(anchor)에 대한 신념추정치를 형성한다.

② 초기값은 수취된 추가정보를 고려하여 수정된다. 이것은 Mutchler(1984)에 의해 제안된 두 단계 신념수정과정의 둘째 국면과 유사하다¹⁵⁾. 이 국면에서 의사결정자는 판단에 대한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에 도움을 얻고자 더 나은 정보를 수집한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새로운 신념은 다음 조정을 위한 초기값이 되고 그러한 과정이 순차적으로 계속된다. 이와 같이 특정 시점에서 현재의 신념은 이전과 이후 모두를 조망하는 것이다. 즉 현재 신념은 모든 과거의 정보를 요약함은 물론 미래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기초로 삼는 것이다¹⁶⁾. 이런 원칙이 갖고 있는 장점은 개개인에게 기억이 부하량을 줄이면서 이전 정보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통합한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정보의 정보성이나 진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규범적 신념수

15) Mutchler, J., "Auditor's Perception of Going Concern Opinion,"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Spring 1984), p.17~30.

16) Anderson, N., Foundation of 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 (N.Y.: Academic Press, 1981).

정모형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설 뿐만 아니라 모든 기타 가설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의 일관성을 평가하도록 의사결정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만일 그 가설이 참일 경우 관찰될 확률이 그 가설이 거짓일 때 자료를 관찰할 확률과 다르다면 자료나 정보는 정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셋째, 이 모형에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조정은 적응과 관성의 힘 사이에 갈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제한된 정보처리능력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처리과정이 전형적으로 소음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과잉반응은 그 유기체가 관성의 상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응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이 모형의 형태는 개개인의 판단과정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가 현재 신념에 결합되기 전에 특정 가설에 대해 긍정적이냐 또는 부정적이냐가 식별되거나 부호화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대조/관성 모형은 이상에서 요약한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신념수정과정의 기술적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모형의 두 가지 형태는 정(+)의 정보와 부(-)의 정보를 다루는 과정을 구별하고 있다. 신념의 강도는 부(-)의 정보가 피험자에 의해 인지될 때 감소모형(discounting model)에 의해 감소되고, 증가모형(accretion model)은 정(+)의 정보를 다루는데 이용된다.

① 감소모형(discounting model)

감소모형은 감사인이 기업의 존속에 의문을 일으키는 부정적 정보를 검토할 때 적합한 모형이다. 감소모형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된다.

$$S_k = S_{k-1} - W_k S(a_k) \quad \text{----- [1]}$$

S_k = k번째 부의 정보를 평가한 후 신념의 강도($0 \leq S_k \leq 1$)

S_{k-1} = k-1번째 부의 정보에 기초한 특정 가설 이전의 강도($0 \leq S_{k-1} \leq 1$)

$S(a_k)$ = k번째 부의 정보의 주관적 강도($0 \leq S(a_k) \leq 1$)

W_k = 부의 정보에 대한 조정가중치

식[1]은 의사결정자가 k-1번째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한 값인 S_{k-1} 이 현재 입장의 초기값이 되고, 그 초기값에 대한 조정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

있을 때 이루어진다. 즉 새로운 정보인 k번째의 부(-)의 정보가 제공되면 의사결정자는 현재 신념의 강도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주관적인 강도와 개인적인 민감성에 따라서 신념수정(S_k)이 완결된다. S_k 는 다음 조정을 위한 초기값이 되고 그러한 과정이 순차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는 의사결정자가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그 부정적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로 부호화함으로써 인하여 신념감소를 가져오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정보라 하더라도 감사인에 따라 상반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조정가중치(W_k)는 적응과 관성간의 상충관계를 모형화 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적응은 대조효과를 가정함으로써 모형화 된다. 특히 원초신념 즉 기초값이 낮고 강한 부(-)의 정보를 수취하게 되면, 새로운 정보는 상대적으로 작은 신념수정만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원초신념이 높다면, 동일한 정보라 하더라도 더 큰 신념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대조가정은 새로운 정보에 따른 조정이 그 정보와 현재의 입장간의 불일치에 민감하게 적응하는 것과 일치된다. 이 대조효과는 이전의 초기값에 비례한 조정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모형화 된다.

$$W_k = \alpha S_{k-1} \text{-----} [2]$$

여기서 $a(0 \leq a \leq 1)$ 는 비례상수이다. 관성의 힘은 모수가 대조효과를 줄이는 내용을 나타내는 비례상수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것이다. 그 α 의 모수값은 부(-)의 정보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작은 α 값은 새로운 정보에 둔감함을 의미하며, 높은 α 값은 새로운 정보에 높은 민감성을 의미한다. 의사결정자의 경우 이러한 모수는 개인 및 상황적 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신념에 대한 주장은 새로운 부(-)의 정보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증주의자들은 부(-)의 정보에 민감해지기 쉽다. 또한 여기서 검정된 모형의 형태는 α 모수의 영향이 순차적 신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상수임)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완전한 감소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_k = S_{k-1} - \alpha S_{k-1} S(a_k) \quad \text{-----} [3a]$$

$$= S_{k-1} - (1 - \alpha S(a_k)) \quad \text{-----} [3b]$$

식[3b]는 k번째 부(-)의 정보를 수취한 후 신념의 강도가 k-1 초기값의 크기(S_{k-1})와 개인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민감성(α) 뿐만 아니라 정보의 주관적 강도($S(a_k)$)의 함수임을 의미한다.

② 증가모형 (Accretion Model)

증가모형은 감소모형과 아주 유사하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S_k = S_{k-1} + r_k S(b_k) \quad \text{-----} [4]$$

S_k = k번째 정의 정보를 평가한 후 신념의 강도 ($0 \leq S_k \leq 1$)

S_{k-1} = k-1번째 정의 정보에 기초한 어떤 가설 이전의 강도 ($0 \leq S_{k-1} \leq 1$)

$S(b_k)$ = k번째 정의 정보에 대한 주관적 강도 ($0 \leq S(b_k) \leq 1$)

r_k = 정의 정보에 대한 조정가중치

식[4]는 의사결정자가 k-1번째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한 값인 S_{k-1} 이 현재 입장의 초기값이 되고, 그 초기값에 대한 조정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이루어진다. 즉 새로운 정보인 k번째의 정(+)의 정보가 제공되면 의사결정자는 현재 신념의 강도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주관적인 강도와 개인적인 민감성에 따라서 S_k 로 신념 조정이 완결된다. S_k 는 다음 조정을 위한 초기값이 되고 그러한 과정이 순차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감사인은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그 정보를 정(+)으로 정확하게 부호화하는 최종신념을 나타낸다. 적응은 놀람효과를 통합함으로써 모형화 되는데, 여기서는 낮은 신념이 높은 신념보다 정(+)의 정보에 의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달리 말하면, 동일한 정(+)의 정보는 이전 신념이 낮을수록 신념의 수정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정가중치의 비율을 이전 신념에 부여함으로써 모형화 된다.

$$r_k = \beta (1 - S_{k-1}) \quad \text{-----} [5]$$

또한 모수 β 는 관성(inertia)효과를 모형화 하는데 이용된다. 이 모수 ($0 \leq \beta \leq 1$)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며, 즉 모수 β 의 값이 클수록

새로운 정보에 대한 민감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증가모형은 최종입장이 초기값과 상향조정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제외하면 감소모형과 같은 동일한 일반적인 형태를 따른다. 완전한 증가모형은 다음과 같다.

$$S_k = S_{k-1} + \beta (1 - S_{k-1}) S(b_k) \quad \text{----- [6a]}$$

$$= S_{k-1} (1 - \beta S(b_k)) + \beta S(b_k) \quad \text{----- [6b]}$$

식[6b]는 k번째 정(+)의 정보를 수취한 후 신념의 강도가 k-1 초기값의 크기(S_{k-1})와 개인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민감성(α) 뿐만 아니라 정보의 주관적 강도($S(a_k)$)의 함수임을 의미한다.

③ 혼합정보모형(Mixed Evidence Model)

혼합정보모형은 조정과정이 고려중인 정보에 적절한 것이면 무엇이든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정보가 현재 신념에 통합되기 이전에 정(+)이나 부(-)로 부호화됨을 가정한다. 이와 같이, 혼합모형은 혼합된 정보 즉 부(-)와 정(+)의 정보가 섞여서 제공되어질 때 부(-)의 정보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감소모형으로, 정(+)의 정보에 대해서는 증가모형을 동시에 이용하여 신념수정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단순한 감소모형과 증가모형을 고쳐 서술한 것으로 앞의 식[3a]와 식[6a]와 동일하다.

$$\text{부(-)의 정보에 대해서는 } S_k = S_{k-1} - \alpha S_{k-1} S(a_k)$$

$$\text{정(+)의 정보에 대해서는 } S_k = S_{k-1} + \beta (1 - S_{k-1}) S(b_k) \quad \text{----- [7]}$$

혼합모형의 중요한 관점은 α 와 β 의 모수에 대한 상대적 크기이다.

Einhorn and Hogarth(1985, 1987)는 α 와 β 의 모수에 대한 서로 다른 조합의 의미를 논의하고 있다. <표 2-1>는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민감성(α)과 긍정적인 정보에 대한 민감성(β)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의 결합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표 2-1>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에 대한 태도

구 분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민감성(α)	
		낮다	높다
긍정적인 정보에 대한 민감성(β)	높다	㉓ 긍정적 (advocate)	㉔ 높은 민감성 (highly sensitive)
	낮다	㉕ 둔감성 (insensitive)	㉖ 부정적 (skeptic)

하단의 좌측 칸의 ㉕는 두 모수치의 값이 모두 낮다. 이러한 사람은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 양쪽에 대해 둔감하며 새로운 정보는 원초입장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친다. 상단의 오른쪽 칸인 ㉔는 그와 정반대인 사람으로서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 양쪽에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사람의 경우 전형적으로 원초입장에서 변화는 매우 크다. 상단의 왼쪽 칸 ㉓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정보가 신념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긍정적 정보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특정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수에 의해 특정 지을 수 있다. 하단의 오른쪽 칸 ㉖는 부정적 정보에 대해서는 큰 가중치를 두지만 긍정적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 칸은 정보의 평가과업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도록 훈련을 받은 실험자로 성격 지을 수 있다. 또한 반박정보를 이론검정의 방법으로 보는 반증주의자의 사고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성격이라 볼 수 있다.

선행적 정보의 편이가 없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α 와 β 모두에 대해 높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정보에 대해 높은 민감성이 있는)가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정보에 대한 태도가 비대칭적 성격을 보인다는 견해에서 상당한 실증적 정보를 나타낸다. 이러한 편이 때문에 순차적으로 제시된 정보에 반응을 하는데 있어서 비대칭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즉 처음에 제시된 정보는 나중에 제시된 상충적인 정보에 반응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수정하지 않는다면 정보의 순서에 의해 신념의 편이가 형성할 것이라 생각한다.

<표2-1>의 틀 내에서, 이것은 긍정적 행위로 기술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편이는 피험자의 인지에 대한 상관관계와 피험자의 탐색 전략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조/관성모형 내에서, 이들의 결과는 α (β)가 작은(큰)값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감사인은 교육, 훈련 및 경험 등에 의해 증거평가를 부정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무제표 상에 오류가 적발되지 않을 감사위험 때문에 감사인은 α 가 β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¹⁷⁾. 달리 말하면, 반박 증거에 대한 감사인의 태도는 입증증거에 대한 태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3. 감사인의 보고책임

1) 보고책임(accountability)

사회심리학에서 보고책임이란 '자신의 견해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규명하도록 요구받는 일종의 사회적 압력'¹⁸⁾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신의 견해가 평가되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¹⁹⁾라고도 정의된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행동계획에 따라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은 사회심리학의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스스로의 행동계획에 따라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 특성의 개인이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행동에 반응하도록 만들 것이며, 만약에 그들의 반응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설명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그들의 반응을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돌려놓으려

17) Ashton, A. H., and Ashton., R. H., op. cit.

18) P. E. Tetlock, and J. I. Kim, "Accountability and Judgement Processes in a Personality Prediction Ta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987, pp.700-709.

19) I. Simonson, and P.Nye, "The Effect of Accountability on Susceptibility to Decision Error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1, 1992, pp.416-446.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계속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전개된다면 그 개인은 다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 의사결정환경 가운데 하나의 특성으로 개인은 자신 및 타인에게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조직화된 사회는 어느 정도의 규제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제는 서로간의 규율이나 규범·관습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보고책임은 이러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²⁰⁾. Tetlock(1985)은 보고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¹⁾. 보고책임은 중요한 규칙 및 규범을 강요하는 메카니즘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개인적 의사결정과 그들이 소속한 사회제도간의 사회심리학적 관계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은 그들이 수행한 모든 결과에 대해 명시적 또는 암묵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개인이 다른 사람들이 용인할 수 없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조직의 규범과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게 된다.

특정 개인이 의사결정시에 보고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의사결정의 결과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정신적 노력만을 투입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정보 분석 등의 정신적 노력이 투입된다면, 그 자신에게 그 만큼의 부의 효용만 창출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신적 노력을 투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 만큼 커지게 된다.

반면에 특정 개인이 보고책임을 인식하게 되면, 피보고책임자의 다양한 반응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증거를 스스로 준비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보고책임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정신적 노력에 대한 부의 효용보다

20) J. Pfeffer, "Management as Symbolic Action :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Organizational Paradigm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3, 1981, pp.641-653.

21) P. E. Tetlock, "Accountability: The Neglected Social Context of Judgement and Choice." In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7), eds. B. M. Staw and L. Cummings. Greenwich ct: JAI Press, 1985.

정신적 노력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고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보고책임자로부터의 불이익(예를 들면, 비난이나 보류, 법적 책임 등)으로 인한 부의 효용에 대한 기대값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의 개인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정신적 노력을 더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보고책임의 강도와 보고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에 의존하게 된다. 즉 보고책임의 강도가 클수록, 보고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수록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정신적 노력은 더 커지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정신적 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보처리과정이 정교해질 것이며, 의사결정의 질은 향상된다.²²⁾ 의사결정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최신효과와 같은 의사결정시의 편익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고책임이 모든 의사결정시의 편익을 완화 또는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Kennedy(1993)는 보고책임에 의한 편익의 희석화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²³⁾.

$$JQ = F(\text{capacity, motivation, internal data, external data})$$

JQ = 의사결정시의 질(judgement quality)을 말함

의사결정의 질(judgement quality)은 노력(effort)이라는 요소와 자료(data)라는 두 가지의 요소로 결정되며, 노력은 다시 능력(capacity)과 동기(motivation)의 함수이며, 자료는 내부적 자료(internal data)와 외부적 자료(external data)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질은 능력, 동기, 내부적 자료, 외부적 자료의 함수가 된다. 이 모형에서 능력은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동기는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과정상에 투입하게 되는 정신적 노력의 양을 결정하게 되는 유인을 말한다. 내부적 자료는 의사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체계 즉 지식을 말하며, 외부적 자료란 의사결정과정에서 외부에서 제공되어지는 정보를 말한다.

22) R. h. Ashton, "Effect of Justification and a Mechanical Aid on Judgment Performance." Organization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2, 1992, pp.292-306.

23) J. Kennedy, "Debiasing Audit Judgement with Accountability: A Framework and Experimental Resul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1, Autumn 1993, pp.231-245.

능력과 의사결정의 질의 관계를 보면,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의사결정에 투입되면 그 사람의 능력은 분산되므로 특정의 의사결정의 질은 저하된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든지 또는 다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여 하나의 의사결정에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볼 때, 능력은 키울 수 있는 요소이므로 능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기와 의사결정의 질의 관계를 보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의 투입이 필요하며, 더 많은 노력의 투입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동기부여란 결국 투입되는 노력에 따른 부의 효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유인의 예로 금전적 혜택과 보고책임이 제시될 수 있다.

내부적 자료와 의사결정의 질의 관계를 보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등을 통하여 의사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높이든지, 의사결정도구를 제공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적 자료와 의사결정의 관계를 보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되어지는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 요약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비관련자료의 제거도 중요하다. 외부적 자료와 내부적 자료의 차이점은 의사결정시점에 의사결정자의 지식 체계속에 포함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의사결정자의 지식 체계속에 특정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외부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그러한 정보의 추가제공은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한다.

최신효과를 위의 이론에 대응시키면, 최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자료의 처리시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의이지 자료의 불충분에 기인하는 편의가 아니다. 따라서 최신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자의 노력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며, 그 방법 중 하나로 보고책임이 제시될 수 있다.

보고책임은 특정 전문직업인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분야의 전문직업인들은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상황에 항상 처해 있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문감사인은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정당화시킬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감사인의 판단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를 Ashton²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이후 감사판단과정과 관련된 다수의 문제들을 조사하여 왔는데, 그 결과 감사인들은 인지심리학에서 구체화된 직관과 편이가 감사인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mith & Kida)²⁵⁾. Tetlock(1985)은 인지연구 패러다임이 판단과 의사결정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의사결정자에게 직면하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²⁶⁾. 그는 의사결정 환경의 본질적 특성에 상응하여 발전되어온 행위전략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의 영향요인 가운데 보고책임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감사인의 판단과정에서 보고책임의 중요성은 Gibbins & Emby(1984)에 의해 수행한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전문감사인의 판단의 질과 그 결과를 조사하였다. 실무감사인들에 의한 전문적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조사된 판단의 질은 의사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다. 더불어 감사인들은 판단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정보탐색이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²⁷⁾.

2) 감사에서의 보고책임 전략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한 보고책임은 의사결정을 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발

24) Ashton, R. H., "An Experimental Study of Internal Control Judge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974.

25) Smith, J. F. and Kida, T., "Heuristics and Biases: Expertise and Task Realism in Auditing." Psychological Bulletin(May), 1991.

26) P. E. Tetlock, op. cit..

27) Gibbins, M., and Emby, C., "Evidence on the Nature of Professional Judgement in Public Accounting." Auditing Research Symposium 1984.

생활 수 있다. 사전적 의사결정 보고책임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타인에 대해 미리 방어해야 할 때 나타난다. 이를 조망적 합리성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가장 방어 가능한 입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지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은 이미 행한 의사결정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할 입장에 처할지도 모르며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입장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바람직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은 과거의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회고적 합리성을 끌어들이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인지과정에서 많은 부분은 체면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다.

보고책임은 곤경에 처하거나 처할 가능성이 있을 때 개인의 판단이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곤경은 행위자가 실제 또는 가상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의해 손해배상을 요구받거나 요구받을 가능성에 대한 명성에 바람직하지 않는 사건에 처한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곤경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또는 실제의 부정적 입장을 말한다. 따라서 곤경은 개인행위의 결과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신념과 일치되지 않을 때 처하게 된다.

Schlenker(1984)는 통상적으로 곤경에 처하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건은 감사인의 일상적 행위환경에서 나타난다고 한다²⁸⁾.

가) 자신의 결정이나 행위가 대중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것으로 믿는다.

나) 자신의 성과가 타인에 의해 평가될 것으로 믿는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이 존재한다.

다) 자신의 결정을 해명 또는 정당화하거나 타인을 이해시킬 수 있음을 기대한다.

Tetlock(1985)은 곤경의 정도는 ① 사건의 바람직하지 못함의 정도 ② 사건에 대한 개인의 외양적 책임 ③ 자신의 명성유지에 대한 개인의 욕구로서, 이 세 가지 요소의 함수로 보고 있다. 이들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증가하면 인지된 곤경의 정도는 증가한다. 개인이 곤경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은 해명과 사과가 있다. 해명은 곤경을 유도하는 사건을 이해시키는

28) Schlenker, B. R., "Personal Accountability : Challenges and Impediments in the Quest for Excellence Report for Navy Personne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1986.

데 사용되며, 사과는 비난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사건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²⁹⁾).

감사인은 감사의뢰인, 타 감사인,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해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책임전략을 사용한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항상 행위나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사결정은 방어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감사인이 어떤 보고전략을 사용하고, 전략을 사용하기 위한 동기, 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내용이 없었다.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이야말로 감사인의 의사결정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mby & Gibbins(1988)는 보고책임전략에서 감사인의 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연구하였다³⁰⁾. 피험자인 감사인들에게 감사상황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당화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했다. 피험자들에게 특수한 감사상황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들의 감사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두 가지 요인으로 조작하였는데, 상황에 대한 친숙성과 긍정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상대적 정도이다. 그 결과는 친숙성에 대해 주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모든 감사인들은 익숙한 상황보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큰 정당화를 필요로 하였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보고책임을 사용한다는 심리학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보다 엄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더 크게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긍정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감사인의 책임에 따라 다양했다.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 파트너의 욕구는 정당성을 더 필요로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비파트너의 반응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 한편, 나머지 비파트너들은 긍정 및 부정적 결과가 비슷한 상황(예로 결과에 대해 가장 큰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서 가장 큰 정당성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이들은 두 가지 반응 패턴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오류의 형태

29) P. E. Tetlock, "Toward an Intuitive Politician Model of the Attribution Process." In the Self and Social Life, ed. B. R. Schlenker. New York: McGraw-Hill. 1985.

30) Emby, C., and Gibbins, M., "Good Judgement in Public Accounting: Quality and Justificat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Spring), 1988.

(즉 규범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에 의한 원인인 지를 조사했다. 규범적 오류는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의 성격과 방법에 관련된다. 예를 들면 비윤리적 행위는 규범적 오류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술적 오류는 사실의 문제와 관련된다. 계산상 오류는 기술적 오류의 한 예이다. Emby & Gibbins는 일차적으로 규범적 오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감사인은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기대할 때 더 큰 정당성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상정을 하였다. 한편 그들은 기술적 오류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감사인은 긍정 및 부정적 결과가 비슷할 때 더 큰 정당성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파트너는 주로 규범적 오류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규범적 오류에 대해 더 큰 정당성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욕구는 회계법인의 평판뿐만 아니라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결과이다. 또한 비파트너들이 규범적 오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비파트너들은 기술적 오류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규범적 오류보다 기술적 오류에 더 큰 정당성을 필요로 하는 비파트너들은 기술적 오류가 부정적 평가결과를 가져오는 법인내 자신들에 대한 평가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의사결정 및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인들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평가에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감사의뢰인과 기타 이해관계자는 그러한 감시자 및 평가자다, 각 감시자는 감사인에 대해 엄격하게 신성함을 요구하기도 한다.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의뢰인은 감사인을 교체할 수도 있다. 어떤 감사인들은 법인 내 감사인, 다른 법인의 감사인, 공인회계사회 등 감시자에 의해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들 감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전문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상호감리를 통하여 성실성을 강요하기도 한다.

감사인은 평가자들의 관점이나 수준이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감사인은 기술적 진부화를 이유로 재고자산을 저평가하기로 하였다면, 감사의뢰인이 그에 동의하지 않고 감사인을 위협할 것이다. 동시에 공정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저평가를 요구하는 제3자인 채권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인은 의뢰인과 제3자의 상충적 견해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보고책임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감사인의 보고책임에 사용된 전략과 잠재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사회심리학에서 조사되어 왔는데, 감사상황에서도 재조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보고책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미와 실패시점 및 중요한 의문에 대한 판단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감사실무에서 감사인의 판단상 혼란은 물론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인의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2005년 회계감사기준의 개정과 회계감사적용지침을 제정하면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판단기준, 계속기업의 평가에 대한 경영자의 실행계획의 검토범위, 계속기업의 존속 여부에 대한 평가기간을 정해 놓음으로써 경영자와 감사인의 책임범위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3) 판단 및 보고에 있어서 보고책임의 영향

자신의 판단이나 행위에 대해 책임을 가진 사람은 정보처리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책임은 개인에게 보다 더 복잡한 인지사고과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보다 많은 복잡한 사고과정을 함으로써 판단과정상 긍정 및 부정적 양쪽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고책임이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고책임은 순서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심리학에서의 연구의 대부분은 개인이 정보를 평가하는 순서가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상황 하에서 초두효과가 있는가 하면, 다른 상황에서는 최신효과가 나타난다. 초두효과는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진 분석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신념을 유지하고 지지하는데서 나온다. 최신효과는 제일 나중에 제공되어진 추가적인 정보에 개인적인 가중치를 더한데서 나온 결과이다.

감사인은 혼합증거(긍정적과 부정적 증거)를 평가할 때 최신효과를 나타낸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그들이 의사결정에 대해

여 보고해야 할 책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고책임은 희석효과를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은 진단과 비진단성 정보를 연계시켜 개인에게 진단적 정보만을 제시할 때 더 큰 회귀적 예측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덜 극단적인 판단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사건과 예측 결과간 유사성을 줄인다는 것이다.

셋째, 보고책임은 판단상의 일관성(consistency) 및 합의성(consensus)을 증대시킬 것으로 본다. 이는 보고책임이 보다 더 심도있는 정보처리과정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역시 판단정책에 보다 큰 일관성을 유도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연구에서는 보고책임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렌즈모델에 포함된 다중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고책임은 개인에게 보다 더 복잡한 인지사고 과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보다 많은 복잡한 사고과정을 함으로써 판단과정상 긍정 및 부정적 양쪽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감사대상회사의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판단과 보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4) 계속기업에 대한 보고책임의 중요성

회계감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국면중의 하나가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 즉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계속기업 가정의 적정성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감사보고에 누락된 사유에 의해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감사인은 대내외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더구나 기업의 사회성·공공성·공익성이 강조되는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감사인의 책임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계속기업에 관한 판단에서 적절한 감사절차의 적용과 그 결과에 대한 보고책임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5년 3월에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은 감사계획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을 통하여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중요한 의문사항을 검토하고 중요한 의문이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의문해소에 필요한 제반 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경영자의 향후 경영계획을 평가한 후에도 기업의 존속에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의문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계속기업으로서의 회사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자 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파악된 경우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계속기업가정에 대해 경영자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 감사계획시 고려사항, 경영자의 평가에 대한 고려, 추가적인 감사절차 그리고 감사결론과 보고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확실성의 해결을 위해 수립한 경영계획의 효과 및 기타 불확실성의 해소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감사증거에 대한 검토 후에도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정의견(특기사항문단에 기재) 또는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가지의 중요한 불확실성이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이 합쳐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감사인은 특기사항문단을 기술하기 보다는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따라서 개정된 감사기준에서는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더욱 구체화된 것이다.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감사인은 모든 감사대상회사에 대하여 계속기업으로의 존속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이다. 특히 수많은 관련 자료들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구조적·정보집약적인 작업이다. 이와 같은 인지과정에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에 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실무에서는 경험이 많은 감사인들만이 계속기업 판단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의 계속기업에 대한 보고책임은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절차의 수행,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판단 및 의견결정에 이르기까지 정보처리방법과 인지과정에서의 편의에 영향을 미친다.

제2절 선행연구

1. 계속기업의 보고에 관한 연구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은 이연된 비용의 회수가능성, 세무분쟁, 소송 등과 같이 비교적 쉽게 식별이 가능한 특정사항에 관련된 불확실성과 반복적인 영업손실, 운영자금의 격심한 부족,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지원의 두절, 차입금의 약정사항불이행, 산업 또는 경기침체에 다른 영향 등과 같이 복합적인 불확실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에 관한 문제는 복합적인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연구는 Mutchler(1985), Levitan and Knoblett(1985), Menon and Schwartz(1987), Dopuch et al(1987), Bell and Tabor(1991) 등의 국외연구가 있다.

불확실성 감사의견의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는 김창수·황윤식(1994)의 국내연구와 Dodd, Dopuch, Holthausen과 Leftwich(1984, 1986), Fleak과 Wilson (1991), Frost(1994), Jones(1996) 등의 국외연구가 있다.

계속기업 관련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초기에는 주로 재무비율을 이용한 계속기업 예측모형 검정의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채무 조정 관련 변수, 경영자의 자구계획 변수들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자체예언실현효과에 관하여서는 실험연구(Kida,1980, Tucker et al,2003) 조사와 인터뷰(Mutchler,1984), 전문가조사(Bell,1991) 등의 방법론이 사용되었다.

계속기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Behn, Kaplan and Krumwiede(2001)의 연구³¹⁾ : SAS No.59가 감사인의 계속기업 관련 의견표명시 경영자의 자구계획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감사인의 계속기업 의견표명 여부와 10-K나 사업보고서에 공시

31) Behn, B. K., Kaplan, S. E., and Krumwiede, K. R. "Further Evidence on the Auditor's Going Concern Report: The Influence of Management Plan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0, 2001, p.13-27.

된 MD&A(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에 추가차입, 증자 및 주요자산 매각 등의 자구계획이 표명되었는지의 여부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Pryor와 Terza(2002)의 연구³²⁾ :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예언실현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그들은 자체예언실현효과를 검정할 때 문제가 되는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계속기업 관련 의견표명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기업도산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계속기업 관련 의견표명 변수에도 관련이 있고, 기업도산에도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독립변수와 회귀모형의 잔차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게 되어 회귀식의 기본가정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모형(two stage method)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분석결과 기업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자체예언실현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Tucker et al(2003)의 연구³³⁾ : 게임이론 예측모형을 실험을 통해 검증해보는 방법으로 자체예언실현효과를 분석했다. 그들은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의견이 자체예언실현효과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계속기업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경향이 작아질 것이며, 고객회사도 감사인의 계속기업 관련 의견이 자체예언실현효과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감사인을 더 빈번히 변경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운원, 박홍철(2003)의 연구³⁴⁾ : 계속기업의문 특기사항이 있는 감사보고서 공시일 전후한 +10일부터 -10일까지의 사건기간 동안 시장모형에 의한 평균비정상수익률(AR)과 누적평균비정상수익률(CAR)을 측정하여 유의성을 감정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계속기업 의문 특기사

32) Pryor, C., Terza, J., "Are Going Concern Audit Opinions A Self Fulfilling Prophecy?" "Advances in Quantitative Analysis of Finance and Accounting 10, 2002, p89-116.

33) Tucker, R.R., Matsumura, E. M., and Subramanyam. K. R. "Going Concern Judgements: An Experimental Test of the Self Fulfilling Prophecy and Forecast Accuracy,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2, 2003, p.401-432.

34) 이운원, 박홍철, "계속기업 의문 특기사항의 정보효과", 회계저널 제12권 2003, p.87-105.

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의 공시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공시일 이전 9일째부터 공시일 이후 9일째까지 지속되었고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지만 신규로 공시되는 경우가 반복 공시되는 경우에 비하여 그 리고 관리종목이 일반종목에 비하여 각각 부정적인 강도가 약간 더 컸음을 보 여주고 있다.

손성규(2005)의 연구³⁵⁾ : 수익성, 유동성, 자본구조 관련 재무변수와 계속 기업 관련 의견 표명 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감사준칙의 내용들이 실제로 어떠한 양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 익성, 유동성, 자본구조 관련 재무변수와 감사인의 계속기업 의견표명 여부 및 의견의 강도(특기사항,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거절)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계속기업 관련 의견표명 변수와 기업의 도산 간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ryor와 Terza(2002)가 제시한 2단계 모형의 방법론을 준용하였으며 분석결과 국내의 경우에도 자체예언실현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2. 감사인 판단에서 신념수정에 관한 실증연구

신념수정에 관한 실증 연구는 관리회계 측면에서 보다 증거와 정보를 평가 하고 다루는 감사분야에서 많은 행해지고 있다. 다음은 감사분야에서 감사인 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 분석한 연구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감사인 판단에서 신념수정에 관한 선행연구

Asare(1992)의 연구³⁶⁾ : 계속기업의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감사 인의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처리변수를 구체화시켰다. 이들 변수는 의사결정구조(decision frame), 감사인이 갖고 있는 원초신념 (initial belief)의 크기, 증거를 평가하는 순서(order)이다. 첫째, 의사결정구

35) 손성규, 계속기업 의문에 대한 감사인 의견표명의 자체예언실현효과, 회계저널 제14권 제2호 2005년 6월 p 169-190.

36) Asare, S.K., op. cit..

조에서 반대정보(완화요소)를 처리한 후 신념수정은 존속(실패)의 원초가설을 갖고 있는 감사인이 더 높다는 예측을 하였다. 정보내용이 일정할 때 이 예측은 입증정보(confirmatory information)보다 반박정보(disconfirmatory)에 더 많은 가중치가 부여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둘째, 반대정보(완화요소)를 처리하기 직전 감사인의 판단을 P(C)라고 한다면, 사전 P(C)의 크기에 따라 후속되는 반대정보(완화요소)에 의해 신념수정의 증가(감소)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증거의 평가순서에서는 최신효과(recency effect)가 신념수정에서 발생되고 이러한 최신효과는 감사인의 의견결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 예측은 8대 회계법인 가운데 4개의 회계법인에 종사하는 70명의 경험을 가진 감사인을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원초신념과 관련된 예측과 증거를 평가하는 순서에 대해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그런데 의사결정구조, 가설구조와 관련된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감사인의 증거의 방향(즉 입증 대 반박)보다 오히려 증거의 정보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Pei, Reed, and Koch(1992)의 연구³⁷⁾ : 이들의 연구는 Einhorn & Hogarth의 신념수정모형(1987)을 토대로 하여, 감사인이 진술한 것을 이용한 성과감사상황에서 그 모형의 최신효과의 예측을 검증하였다. 280명의 실무 감사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감사인들의 신념수정이 그 모형의 예측대로 최신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그 결과는 그 모형의 신념수정에 대한 중요한 가정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Tubbs et al.(1991)의 연구³⁸⁾ : 250명의 감사인들을 이용하여 순서효과와 반응방법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네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연구에서 두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상위 감사인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사용된 과업변수는, 첫째는 주요 계정의 회수가능성을 다룬 외상매출금 시나

37) Pei,B.K.W., Reed,S.A. and Koch,B.S., op. cit..

38) Tubbs,R.M., Messier Jr.,W.H. and Knechel,W.R., op. cit..

리오를 제시하였다. 둘째는 채무계정이 적정하게 표시될 가능성을 다른 외상 매입금 상황을 포함하였다. 이 시나리오를 각각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후마다 판단하게 하는 순차적(step-by-step) 방법과 모든 증거를 제시한 후 판단하게 하는 동시적(end of sequence)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들은 그 모형의 예측과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는데, 일관된 부의 증거처리과정에서는 순서효과가 없었으나 혼합증거의 처리과정에서는 최신효과가 있었다. 최신효과는 감사인이 혼합증거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때 발견되었으나 동시적으로 처리했을 때 그러한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긴 혼합증거의 시리즈를 피험자에게 제공한 실험에서는 최신효과는 양쪽 반응방법에서 모두 보고되었다. 또한 혼합증거의 동시적 처리과정이 순차적 처리과정보다 희석효과를 더 크게 나타내는 반응을 하였다.

Butt & Campbell(1989)의 연구³⁹⁾ : 이들의 연구는 정보순서와 가설검증 전략이 감사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Einhorn & Hogarth(1985)의 대조/놀람효과(Contrast/Surprise)모형을 기초로 하여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23명의 실무에 종사하는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을 행하였다. 감사인 들은 내부통제구조에 대해 높거나 또는 낮은 원초신념에서 시작한 후 정과 부의 증거 양쪽 모두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인 들이 일반적으로 입증증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원초신념이 정보제시순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높은 원초신념을 가진 피험자의 판단에서는 정보제시순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낮은 원초신념을 가진 감사인에게는 최신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Bonner & Butler(1988)의 연구⁴⁰⁾ : 311명의 경험있는 감사인 들은 중요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감사계획 단계에서 4가지 비율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감사인의 중간 판단을 보고한 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독립변수는 감사

39) Butt,J.L. and Campbell,T.L., The Effects of Information Order and Hypothesis-Testing Strategies on Auditors' Judgements,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Vol.14(1989)

40) Bonner,S.E., & Butler,S.A., op. cit..

증거(재무비율)의 제시순서와 방법이다.

일관적 정의 증거에 대해 순서효과가 없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계했는데, 첫째 실험은 복합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그 모형의 예측에 반하는 결과로서 일관된 정의 증거가 순차적으로 제시될 때 순서효과를 나타냈는데, 증거의 동시적 처리과정에서는 그러한 순서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동시적 반응방법에서는 더 극단적인 신념수정을 보였는데 이는 단지 두 가지 순서조건 가운데서 나타난 결과이다. 두 번째 실험에서 그들은 순서효과(일관된 반박증거에 대해)가 순차적 반응방법에서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보다 더 극단적인 신념수정은 동시적 반응방법에서 나타났지만 그 변동은 반대방향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피험자가 혼합증거를 평가할 때 최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피험자의 중간 판단에 대한 분석은 이상에서 보고 된 바와 같이 비 일관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입증증거를 제공했을 때 기대했던 방향과 달리 피험자의 중간 판단은 반대방향을 나타냈다. 예를 들면, 연구자들이 입증증거라고 불렀던 것은 실제로 피험자의 신념을 감소시킨 반면 반박증거로 인식했던 것은 신념에 변동이 없었다.

Ashton & Ashton(1988)의 연구⁴¹⁾ : 순서효과와 반응방법효과와 관련하여 Einhorn & Hogarth(1985) 모형의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 두 피험자의 집단을 이용하여 여섯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피험자의 집단은 Alberta 대학에서 회계감사를 수강하고 있는 4학년 학생 62명으로 구성되었다. 다른 피험자 집단은 [Calgary and Edmonton, Alberta]에 있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211명의 실무에 종사하는 감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감사인들은 공인회계사로서 평균 3년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판단의 초기값을 정해준 후에 일관적 증거(강한 긍정적 정보와 약한 긍정적 정보)와 판단의 초기값을 정해준 후에 일관적 증거(강한 부정적 정보와 약한 부정적 정보)를 제시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순서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정의 증거에 대해서는 초기값(기준점)이 적을수록 클 때보다 더 큰 반응을 보이고, 부의 증거에 대해서는 초기

41) Ashton,A.H., and Ashton,R.H., op. cit.

값이 클수록 작을 때보다 더 큰 반응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둘째, 판단의 초기 값을 정해주고 혼합증거의 순차적 평가에서 최신효과의 예측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판단의 초기값, 증거의 제시순서에 관계없이 최신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일관적 정보에 대해 순차적 제시방법과 동시적 제시방법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동시적 제시방법에서 희석효과가 나타났으며, 또한 부의 증거에 대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여 증거와 제시방법간에는 상호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성효(1993)의 연구⁴²⁾ :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과 보고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술적 신념수정모형을 이용하여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판단과 보고결정에 관련하여 심리학적 주요 과업변수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증거제시순서(순서효과), 원초가설구조(구조효과), 원초신념의 크기(놀람효과)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모형의 예측을 토대로 하여 감사인이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혼합증거(의문사항과 의문해소사항)를 평가할 때 증거의 제시순서에 의해 최신효과가 나타나며, 가설구조(존속 또는 실패)효과가 있고, 신념수정의 정도가 증거를 수취하기 이전 입장의 강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놀람효과 등 세 가지 과업변수를 주요 연구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첫째, 감사인이 계속기업 문제를 고려할 때 혼합증거를 검토하는데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먼저 의문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문을 해소시키는 경영계획을 검토하도록 하는 정보처리 순서를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검토의 순차성에 따른 최신효과를 감안할 때 보고결정에서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현행 회계감사기준에서 제시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증거를 검토해야 하는 감사인은 의문해소사항이 지배적인 영향 때문에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기사항으로 기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판단기준에 대한 신념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감사인에 따라 판단기준의 변동성은 크지만 보고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 증거

42) 고성효,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과 보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3.

탐색에 대해 일찍 감사중결을 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좋은 의문해소사항을 검토한 후 감사인은 판단기준보다 충분히 큰 존속확률로 평가하여 추가증거의 탐색에 주의를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보고책임의 영향에 대한 보고결정에서 집단간 차이는 책임감사인이 현장감사인에 비해 최신효과의 크기가 작게 나타났다. 그것은 책임감사인의 경우 현장감사인에 비해 감사증거의 보고결정에 따른 다른 환경변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판단이전의 상태가 추가정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놀람효과에 대한 예측으로 분석결과는 모두 매우 큰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원초신념이 작은 감사인은 원초신념이 큰 감사인보다 동일한 부의 증거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신념을 더 작은 범위로 신념수정을 하며, 작은 초기값은 동일한 정의 증거가 주어졌을 때 더 큰 범위로 신념수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감사인의 의사결정 도구를 설계하거나 교육 및 훈련시 혼합증거의 통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직관적 신념수정에 대한 편협의 위험을 경고할 수 있다.

(2) 신념수정에 의한 최신효과 감소방안 연구⁴³⁾

회계이사결정에서의 Einhorn & Hogarth의 신념수정모형을 이용한 최신효과의 검증은 그동안 많이 행해져 왔다⁴⁴⁾. 이들 연구들은 최신효과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였고 Einhorn & Hogarth의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즉, SbS 응답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신효과가 나타났고 EoS 응답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최신효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심하다. 즉 최신효

43) Adelman, Tolcott and Bresnick, 1993 ; Ahlawat, 1999 ; Asare, 1992 ; Ashton and Ashton, 1988 ; Ashton and Kennedy, 2002; Bamber et al., 1997 ; Butt and Campbell, 1989 ; Cushing and Ahlawat, 1996 ;Dillard, et al., 1991 ; Kennedy, 1993 ; Messier and Tubbs, 1994 ; Pei, Reed and Koch, 1992; Trotman and Wright, 1996; Tubbs, Messier and Knechel, 1990

44) 이들의 분야는 내부통제평가,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계속기업의 평가, 세무보고, 관리회계이사결정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최신정보가 부정적일 때에는 감사범위를 확대하여 시간과 비용을 과다 지출할 수 있고 반면에 최신정보가 긍정적일 때에는 감사범위를 축소하여 향후에 법적인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등 감사의 효과(effectiveness)와 능률(efficiency)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러한 최신효과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신효과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인지적 관여의 증대(greater cognitive involvement), 인과관계의 추론(causal reasoning) 그리고 기타 노력유발과정(effort-inducing procedures)이 있다(Cushing and Ahlawat, 1996). 이러한 최신효과를 감소(제거)시키는 연구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행해져 왔다.

Koonce(1992)의 연구⁴⁵⁾ : 분석적 검토업무에서 감사인의 확률판단에 관한 반대사실추론을 적용하였다⁴⁶⁾. 이들은 이 연구에서 두 가지 실험을 하였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검토효과를 검정하였다. 즉, 실험자가 제시한 매출총이익의 이상적인 변동의 원인(매출 배합)에 대한 설명을 적으라고 지시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발생확률을 높게 평가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을 세 집단(explanation-only, explanation/counter explanation, counter explanation /explanation)으로 나누어 확률을 평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결과 최신효과가 확인되었다⁴⁷⁾. 다시 말하면 매출총이익의 이상변동의 가상원인에 대하여 서면설명을 행한 감사인은 해당 원인이 틀릴 수도 있다는 설명(counter explanation)을 요구받기 전까지는

45) Koonce, Lisa., "Explanation and Counterexplanation during Audit Analytical Review", The Accounting Review., 67(1), 1992, p.59~76.

46) 반대사실사고(counterfactual thinking)란 결과에 대한 대안의 고려를 의미한다. 즉, 실제 발생한 것(what happened)에 대한 다른 가능성(what might have happened)을 고려하는 것이다. Heiman(1990)도 이러한 반대사실추론을 이용하여 분석적 검토에 있어서의 대안의 설명이 오류의 가상원인의 가능성(확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반대사실 중에서 실험자가 제시한 대안은 오류원인의 확률을 감소시켰지만 피험자가 스스로 창출해 낸 대안은 이를 감소시키지 못하였다.

47) explanation-only는 주어진 원인에 대해서만 확률을 평가하는 것이고 explanation/counterexplanation 은 주어진 원인에 대한 확률을 평가한 후에 주어진 원인과 다른 잠재적인 원인에 대한 확률을 평가하는 것이다.

서면설명에 타당성에 관한 신념을 유지(belief perseveranc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nnedy(1993)의 연구⁴⁸⁾ : 계속기업의 판단 시에 수행된 감사업무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감사검토과정(audit review process)이 최신효과를 감소시킨다고 간주하고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보고책임(accountability)을 선정하였는데 연구결과 책임감은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유발시켜서 노력과 관련된 편파인 최신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Rutledge(1995)의 연구⁴⁹⁾ : 최신효과는 과업의 틀을 재구성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최신효과는 순차적 제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동시적 제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옳다면 과업을 감사인의 능력과 일치시키는 재구성(restructuring)을 통하여 최신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순차적 제시방법에서 투자정보의 순차적 판단이 최신효과를 가져온다면 투자정보들의 동시적 통합(simultaneous integration) 즉, 동시적 제시방법으로의 전환은 최신효과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Ashton and Kennedy(2002)의 연구⁵⁰⁾ : 자기검토(self-review)가 최신효과의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지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동시적 처리방법(EoS)에 의한 집단, 순차적 처리방법(SbS)에 의한 집단과 Debiaser집단간 계속기업의 확률평가액을 비교하였다⁵¹⁾. 연구결과 EoS집단보다 SbS집단이 최신효과가 적게 나타났고 SbS 집단보다 Debiaser 집단이 최신효과가 적게

48) Kennedy, Jane., "Debiasing Audit Judgement with Accounting : a Framework and Experimental Resul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1, 1993, p.231~245.

49) Rutledge, Robert W., "The Ability to Moderate Recency Effects through Framing of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7(1), 1995, 27~40.

50) Ashton, Robert H. and Kennedy, Jane., "Eliminating Recency with Self-Review : the case of Auditors' 'Going Concern' Judgement",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5, 2002, p.221~231.

51) Debiaser 집단이란 기본적인 절차는 SbS집단의 절차(12가지 정보에 대한 확률평가)와 동일하고 다른 점은 SbS절차가 끝난 후에 이전의 정보를 다시 검토(자기검토)하게 한 후에 추가로 13번째 확률평가를 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간편하고도 저비용의 방법을 이용하여 감사업무수행 시에 발생하는 최신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고 그 방안으로 최종적인 감사판단을 하기 전에 순차적인 업무에 대한 동시적인 증거통합(EoS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을 외적으로 재구축하거나 EoS 처리방식을 모방하는 자기검토(self-review that simulates EoS processing)방법을 내적으로 재구축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권치환(1986)의 연구⁵²⁾ : 감사조서의 검토과정을 상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신효과가 발생하는 지 그리고 만약 발생한다면 규명책임에 의하여 그 최신효과가 희석되는 지에 대한 연구이다. 실험집단은 정보를 비순차적 제공하고 규명책임을 인식하지 못한 집단1,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규명책임을 인식하지 못한 집단2,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받고 규명책임을 인식한 집단3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에는 최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검증되었고, 실험집단2와 실험집단3의 유의적인 차이는 규명책임에 의해서 최신효과의 희석화효과가 검증되었다.

이형권(2003)의 연구⁵³⁾ : 정보처리와 응답모드를 순차적 제시방법과 동시적 제시방법을 구분하여 최신효과의 존재여부를 조사하였고, 최신효과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자기설명의 지시유무로 정하였다. 자기설명의 지시유무는 제시받은 정보에 대한 확률평가와 더불어 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받은 집단과 지시받지 않은 집단을 말한다. 실험상황은 내부통제의 평가, 관리회계 의사결정 및 계속기업의 평가를 선정하였다. 첫째로, 내부통제의 평가에서는 최신효과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조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즉 초기값의 강도에 따라서 이후에 주어지는 정보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것으로서 연구결과, 초기값이 강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보에 의한 영향이 크고 초기값이 작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정보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조효과가 존재함이 밝혀졌다. 둘째로는 최신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기

52) 권치환, "최근경험효과에 대한 규명책임의 희석화 효과", 회계학연구, 제6호, 1986, p.191~213.

53) 이형권, "회계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신효과와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제18권 제4호, 2003, p.135~166.

위하여 관리회계의사결정상황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SbS집단과 EoS집단별로 증거의 제시순서를 달리하여 살펴본 결과, 응답모드와 정보의 제시순서에 따라 모두 최신효과가 존재함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최신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확률평가의 이유를 적는 요인을 도입하여 이것이 최신효과를 감소시키는 지를 조사했다. 이를 위하여 SbS집단과 EoS집단으로 구분하여 계속기업의 평가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SbS집단에서의 자기설명의 지시가 최신효과를 감소시켰고, EoS집단에서도 대조효과의 감소효과가 일부 발견되었다. 이상에서 대조효과와 최신효과 존재가 확인되었고, 또한 확률평가의 이유를 적으라는 자기설명의 지시가 최신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감사인의 보고책임에 관한 연구

다음의 선행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최신효과를 감사인의 보고책임이라는 요인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들을 요약하였다.

Tetlock(1983)의 연구⁵⁴⁾ : 판단과정에서 개별적 보고책임이 주어짐으로 인해 의도적인 노력을 증가시킨다면, 인지심리학 연구에서 알아낸 초두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연구 집단을 보고책임이 없는 집단, 사전적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 그리고 사후적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사전적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은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보고책임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반면에, 사후적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은 의사결정을 내린 후까지 보고책임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의 죄에 대해 순차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의 죄가 있는 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보고책임이 없고 사후적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에서는 유의한 초두효과를 보였으나, 사전적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사전적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은 순서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보다 심도있는 정보처리과정으로 일관성이 있는 판단을 했다.

54) Tetlock, P. E., "Accountability and Complexity of Thou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July),1983.

Tetlock & Kim(1987)의 연구⁵⁵⁾ : 개인적 예측과업에서 보고책임 문제를 조사하였다. 피험자들을 보고책임이 없는 집단, 사전 노출된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 그리고 사후 노출된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보고책임이 없는 집단은 그들의 반응을 익명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사전 노출 피험자들은 과업을 시작하기 전에 과업을 알려주었다. 사후 노출 피험자들에게는 과업을 완성한 후에 응답을 입증하도록 했다. 타 집단과 상대적으로 사전에 보고책임이 노출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보다 더 복잡한 인지과정을 나타냈고, 보다 더 정확한 응답을 했으며, 의사결정에서 보다 더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사전 노출된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보고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과업수행 중 직관적 처리과정에 의존하지 않았다. 다른 두 집단은 그 과업에 대해 보고책임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인지적 노력을 줄이기 위해 직관적 처리과정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Buchman, Tetlock, Reed(1989)의 연구⁵⁶⁾ : 기업이 합법성을 내포한 것을 기술한 사례를 실무 감사인에게 제시하였다. 그들의 과업은 잠재적 우발부채의 적절한 공시와 발행되어야 할 감사의견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피험자들을 감사결과에 대해 누구에게도 보고책임이 없는 경우, 감사의뢰인에 대한 보고책임이 있는 경우,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보고책임이 있는 경우로 나누었다. 피험자에게 미리 파트너는 한정 의견 감사보고를 원하는 반면 감사의뢰인은 적정 의견을 원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보고책임의 조작성은 선택된 공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감사인은 선택된 감사보고에 영향을 미쳤으나, 경험이 없는 감사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감사의뢰인에 대해 보고책임과 경험이 있는 감사인은 적정 의견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보고책임이 없는 감사인은 한정 의견을 선택했다. 이와 같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은 보통 모호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55) Tetlock, P. E. and Kim, J. L., "Accountability and Judgement Processes in a Personality Prediction Ta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April), 1987.

56) Buchman, T. A., Tetlock, P. E., Reed, R. o., "Accountability and Auditors' Judgement about Contingent Event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Co, 1989.

Lord(1992)의 연구⁵⁷⁾ : 보고책임이 의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피험자를 두 집단 즉 감사책임에서 파트너에 대한 보고책임이 없는 집단과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은 대부분 한정의견을 더 낼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피험자들에게 파트너의 견해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수용 가능한 직관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한 것은 아니었다. 대신에 Lord는 적정의견보다 부적절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보수주의적인 편이가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상황요인(의뢰인, 재무상태 등)은 보고책임이 없는 피험자와 보고책임이 있는 피험자의 의사결정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예로 보고책임이 있는 피험자는 문제가능성이 있는 회계상태를 선호하지 않았다.

Hackenbrack(1992)의 연구⁵⁸⁾ : 허위 재무보고를 한 기업공시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능력의 희석효과를 조사하였다. 그는 예측한 희석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하였다. 첫째 실험에서 진단적 정보와 비목적적합한 정보의 조합을 시니어 감사인에게 제시했다. 39명의 피험자 가운데 32명이 그들의 판단에서 희석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허위보고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할 경우와 이러한 허위의 잠재가능성의 평가보다 더 낮으면 중요하게 잘못된 재무제표를 탐색하지 못한 책임을 감사인에게 돌릴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실험은 상반된 진단증거를 가진 비목적적합한 정보를 포함한 경우의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상반된 진단적 증거는 허위보고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의도를 가진 기업의 관점을 기술한 형태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서 39명의 시니어 감사인 중 34명이 그들의 판단에서 희석효과를 보였다. 감사인의 위험평가는 아주 높았다. 이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심사숙고하여 세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Tetlock & Boettger(1990)의 연구⁵⁹⁾ : 보고책임 피험자들의 인지적 노력

57) Lord, A. t., "Pressure: A Methodological for Behavioral Research in Auditing." Auditing: Journal of Practice & Theory(Fall), 1992

58) Hackenbrack, K., "Assessing a Company's Exposure to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Implication of Seemingly Irrelevant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Spring), 1992.

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진단적 정보에 의해 자신들의 예측을 희석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보고책임이 있고 없음에 대한 단서를 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그들에게 제시하였다. 보고책임이 있는 피험자들은 보고책임이 없는 피험자들보다 더 많은 범위의 정보를 사용했으나, 정보사용에서 선택적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고책임이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요인 간에 복잡한 연계성을 유도하여 더 큰 통합가능성이 원인일 것으로 보았다. 또 다른 설명은 보고책임이 있는 피험자들이 수취한 각각의 증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각각의 증거는 판단 상에 목적적합하다고 가정했다는 것이다. 순서효과를 완화시키는 동일한 처리과정이 피험자들에게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진단적 정보의 영향을 더 희석시킨다는 것이다.



59) Tetlock & Boettger, R., "Accountability: A Social Magnifier of the Dilu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September), 1990.

제3장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감사대상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감사보고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장에서는 Einhorn and Hogarth(1985, 1987)에 의해 주장된 심리학적 신념수정모형에 근거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가설검정을 위한 연구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첫째, 보고책임(accountability)과 순서효과(order effect)와의 관계이다.

심리학연구에서 신념수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어왔다. 동일한 증거세트가 자극을 줄 때 그 순서에 따라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른바 순서효과는 특히 인상을 형성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왔다. 특히 순서효과는 단지 4개나 6개의 단서세트를 갖는다 하더라도 아주 클 수 있다고 한다⁶⁰⁾.

순서효과에 대한 연구는 감사인이 증거를 수취할 때 그 순서에 따라 의사결정을 달리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감사에서 중요하다. 순서효과를 논의함에 있어서 대조/관성모형은 일관적 증거와 혼합적 증거의 순차적인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예측한다.

Einhorn & Hogarth의 모형인 [3b]와 [6b]에 의하면 일관적 증거(모두 정(+))이거나 모두 부(-)인 경우에 대하여 순서효과는 예측되지 않는다.

$$\text{부(-)의 정보에 대한 감소모형 } S_k = S_{k-1} [1 - \alpha (a_k)]$$

$$\text{정(+의 정보에 대한 증가모형 } S_k = S_{k-1} (1 - \beta S(b_k)) + \beta S(b_k)$$

60) Anderdon, N., op.cit..

하지만 혼합증거의 순차적 판단과정에서는 최신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최신 효과는 정(+)과 부(-)의 증거가 모두 강할 때 가장 크며 두 증거 모두에 대해 높은 민감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신효과의 이유는 동일한 부(-)의 증거가 (+,-)의 순차적 순서에서 더 크게 감소되는 가중치를 가지며, 동일한 정(+)의 증거는 (-,+)의 순차적 순서에서 더 크게 증가되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순서효과는 새로운 증거에 대한 조정가중치가 이전에 평가된 증거의 크기와 부호에 달려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인의 판단과정에서 정보의 제시 순서에 따라 순서효과, 특히 최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Asare,1992; Ashton & Ashton,1988; Tubbs et al,1990; Messier and Tubbs, 1993; 고성효,1993). 그런데 이들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보고책임은 더 복잡한 정보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순서효과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다(Tetlock,1983; Kennedy,1993; Lord,1992; Hackenbrack, 1992).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이후 사회전반적인 환경에 의해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책임 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강화된 상황이다. 이에 보고책임의 강화라는 요인으로 인해 계속기업에 대한 판단과 보고라는 행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보고책임을 "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그리고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등에게 감사대상회사의 감사결과에 대한 해명(결백, 변명, 정당화)을 하거나 사과(민·형사상의 책임)를 해야 하는 책임의 정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물론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판단과 보고에 있어서의 감사인의 책임은 모두에게 존재한다. 하급자인 경우 상급자에 대한 보고책임, 상급자인 경우에는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보고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고책임의 정도는 직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고책임의 정도에 대해 partner, manager, incharge 직급은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으로 하고 staff 직급은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가설1은 감사인에게 정보의 제시순서(++--, --++)를 달리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확률을 평가하도록 하였을 경우, 순서효과의 존재여부 및 보고책임의 정도(높고 낮음)에 따라 순서효과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연구가설1 정보의 제시순서에 따라 순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1a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 내에서는 순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1b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 내에서는 순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1c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과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 간에는 순서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보고책임(accountability)과 재검토효과(review effect)이다.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계속기업의 존속여부를 판단한 후 보고를 결정하게 된다. 연구가설1에서는 계속기업의 존속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순서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혼합정보의 제시순서(++--, --++)를 달리하여 존속확률을 순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순차적인 정보처리과정에 의한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가 존재한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인의 판단과정상에 순서효과가 존재한다면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편의를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중의 하나로서 정보들의 동시적인 통합 즉 동시적 제시방법으로의 전환은 최신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Koonce, 1992; Rutledge,1995; Ashton & Kennedy,2002).

본 논문에서는 순차적인 판단절차가 끝난 후에 이전의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확률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단계를 추가시켰다. 이는 재검토가 순서효과를 감소시키는 지 여부 및 보고책임 정도에

따라 재검토를 행하기 이전과 이후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확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가설2 재검토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순서효과가 감소될 것이다.

연구가설2a 재검토를 행하였을 경우,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 내에서는 순서효과가 감소될 것이다.

연구가설2b 재검토를 행하였을 경우,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 내에서는 순서효과가 감소될 것이다.

연구가설2c 재검토를 행하였을 경우,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과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 간에는 판단의 일관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보고책임(accountability)과 보고상 희석효과(dilution effect)이다.

감사인은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해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행하게 된다. 판단의 결과에 따라 보고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보고책임을 높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판단결과와 보고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희석효과). 즉 감사인은 이들 상호간의 이해조정과 보고책임이라는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보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희석효과는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투입이 되면서 판단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이때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의 특성에 따라 희석시킨 판단의 질은 더욱더 향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⁶¹⁾.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고책임 즉 감사의뢰인, 투자자와 채권자,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인 이 3그룹의 이해관계자중 어떠한 이해관계자집단에게 높은 보고책임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계속기업의 의문사항을

61) Messier Jr., W. F., and Quilliam, W. C., "The Effect of Accountability on Judgement: Development of Hypotheses for Auditing",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11 Supplement(1993).

특기사항으로 기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있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가설3 감사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특기사항 기술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Einhorn & Hogarth의 신념수정모형과 계속기업 및 행동이론에 관련된 문헌을 토대로 연구목적에서 제기된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판단과 보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현장실험(실험설문설계)에 의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피험자의 현황을 살펴 본 다음 실험설계, 실험설문의 내용 및 설문절차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피험자의 현황

2006년 3월말일 현재 재경부 등록 회원은 공인회계사는 10,137명이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총회원은 9,285명이며, 이 가운데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5,354명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감사인은 전체 10개 회계법인 가운데 6개의 회계법인에 소속된 감사인 중 무작위로 245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197부(80.4%)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실험설문 중 부적합하게 응답한 피험자 20부(8.2%)를 제외한 177부(72.2%)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 피험자로 확정하였으며, 그 현황은 다음 <표3-1>과 같다.

<표 3-1>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구분	설문지 수	비율
배부	245부	100%
회수	197부	80.4%
제외	20부	8.2%
표본	177부	72.2%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고책임에 따라 의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이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artner, manager, incharge의 직급을 갖고 있는 감사인은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으로 하고, staff의 직급을 갖고 있는 감사인은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로는 감사인 모두에게는 보고책임이 있으나 회계법인내에서 실질적인 보고책임의 정도가 직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대상 피험자로 선정된 감사인에 대해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결과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은 101명이며,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은 76명으로 그 현황은 <표3-2>와 같다.

<표 3-2> 피험자의 실험집단별 표본 수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HA)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LA)			계
	부정선제시형 (g1)	긍정선제시형 (g2)	소계	부정선제시형 (g3)	긍정선제시형 (g4)	소계	
표 본 수	58	43	101	35	41	76	177
	32.7%	24.3%	57.0%	19.8%	23.2%	43.0%	100%

g1(HA/--++) : 보고책임이 높으면서 부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높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해소사항(++)을 검토한 집단

g2(HA/++--) : 보고책임이 높으면서 긍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높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 해소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검토한 집단

g3(LA/--++) : 보고책임이 낮으면서 부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낮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해소사항(++)을 검토한 집단

g4(LA/++--) : 보고책임이 낮으면서 긍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낮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 해소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검토한 집단

앞의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 피험자들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과 낮은 감사인으로 구분하였고, 이 두 집단을 다시 정보의 제시순서 즉 부정 선제시형(부정적 정보를 먼저 제시한 후 긍정적 정보를 제시하여 판단을 하게 하는 집단, --++)과 긍정 선제시형(긍정적 정보를 먼저 제시하고 나중에 부정적 정보를 제시하여 판단을 내리게 하는 집단, ++--)으로 나뉘지면서 4개의 실험집단이 구성된다. 이는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과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 내외 집단간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실험에 참가한 감사인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은 감사경력이 평균 5.05년으로 나타났고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은 평균 1.66년의 감사경험을 갖고 있다. 한편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101명중 65명으로 64.4%,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은 76명중 30명으로 39.5%로 나타나 집단간 업무수행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2. 실험설계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계속기업에 대한 존속여부를 판단과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가설 3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들의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보고책임

모든 감사인은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보고의 결과가 향후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하급자인 경우에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책임을, 상급자인 경우에는 감사의뢰인을 포함하여 외부이해관계자집단에 대한 보고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모든 감사인에게는 보고책임을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보고책임을 있고 없음을 극단적으로 구분하여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험설문을 설계할 때 보고책임을 범위를 "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그리고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등에게 감사대상회사의 감사결과에 대한 해명(결백, 변명, 정당화)을 하거나 사과(민형사상의 책임)를 해야 하는 책임의 정도"로 국한하여 높은 편 혹은 낮은 편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partner, manager, incharge 직급을 갖고 있는 감사인은 보고책임을 높은 감사인 집단으로 하고, staff인 경우에는 보고책임을 낮은 감사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보고책임 정도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독립변수가 된다.

(2) 순서효과

선행연구를 보면 혼합적 정보인 경우 정보의 제시순서에 따라 신념수정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여기에서의 긍정적 정보 혹은 부정적 정보만으로 구성되어진 정보들은 일관적 정보이고,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가 혼합적으로 구성된 정보를 혼합적 정보라 한다. 이때의 혼합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순차적 제시방법(Step by Step, Sbs)과 동시적 제시방법(End of Sequence, EoS)이다. 순차적 제시방법은 정보를 하나하나 추가로 제시하면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고 동시적 제시방법은 모든 정보를 동시에 제시 한 후 한번의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순차적 제시방법을 따를 경우, 즉 긍정 선제시형(++--) 또는 부정 선제시형(--++)을 하였을 경우, 판단을 하는데 시간의 차이에 기인한 순서효과라는 편이가 발생한다. 순서효과(order effect)는 증거들의 제시순서에 따

라 서로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으로 먼저 제시된 정보가 최종판단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게 되는 첫인상효과로 초두효과(primacy effect)가 있고, 나중에 제시된 정보가 최종판단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최신효과(recency effect)가 있다. 최신효과는 전문가적인 집단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편의로써 감사인 또한 전문가집단으로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계속기업에 대한 존속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계속기업의 존속에 불확실한 의문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의문사항을 검토하고 난 후 대차대조표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의 경영자의 실행계획 및 기타요소들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순차성에 따른 순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혼합적 정보를 정보의 제시순서 즉 부정선제시형과 긍정선제시형으로 달리하여 순차적 제시방법에 의해 판단하도록 실험설문을 구분하여 피험자에게 제공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된 종속변수로는 기초정보→추가정보1(- 또는 +)→추가정보2(- 또는 +)→추가정보3(+ 또는 -)→추가정보4(+ 또는 -)에 대한 판단의 결과값을 이용하여 실험집단별로 계산한 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

(3) 재검토효과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최신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최신정보가 부정적일 때에는 감사범위를 확대하여 시간과 비용을 과다지출 할 수 있는 반면에 최신정보가 긍정적일 때에는 감사범위를 축소하여 향후에 법적인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등 감사의 효과와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최신효과를 제거시키는 연구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행해져 왔다.

그 중에서 Kennedy(1993)는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를 섞어버림으로 인해서 긍정과 부정적인 정보의 개별적 영향력이 감소됨으로 계속기업의 판단 시에 수행된 감사업무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감사검토과정을 행하였을 경우에는 최신효과가 감소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최신효과는 순차적 제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동시적 제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이 옳다면 과업의 틀을 재구성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차적 제시방법에서 감사증거의 순차적 통합이 최신효과를 가져온다면 감사증거들의 동시적 통합 즉 동시적 제시방법으로의 전환은 최신효과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순차적 제시방법에 의해 나타나는 최신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동시적 제시방법으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는 재검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기초정보와 추가정보 4가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재검토를 행한 후 계속기업에 대한 존속확률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재검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종속변수로는 아래와 같이 측정된다.

순차적 제시방법에서의 최종판단의 집단별 평균값

vs

재검토후 판단의 집단별 평균값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고책임이 동일한 경우 정보제시순서에 따른 재검토의 효과와 정보제시순서가 동일할 경우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라 재검토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4) 희석효과(dilution effect)

희석효과는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투입이 되면서 판단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이때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의 특색에 따라 희석시킨 판단의 질은 더욱더 향상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할 때에 감사의뢰인에 대한 보고책임을 강하게 인식하여 판단을 한 결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지향적으로 편중되어 현 상황보다 극단적이지 않은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만일 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보고책임을 높게 인식하는 감사인은 잘못된 감사 보고로 인하여 투자자와 채권자 집단에게는 경제적 실패를 안겨줄 것이고, 이 집단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더 복잡한 판단과정을 거쳐 감사의 실패를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와 채권자 집단에 대한 높은 보고책임을 인식하는 경

우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최신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이다. 이는 감사인이 정해진 법안에서 올바른 감사를 행하는 지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이 집단에 대해 높은 보고책임을 갖는 감사인은 계속기업에 대한 판단과 보고를 할 때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감사업무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높은 보고책임을 갖고 있는 감사인에 비해서 감사결과가 덜 극단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본다. 결국 이는 이해관계자집단과의 관계라는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판단 및 보고에 영향을 미쳐 희석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험자들에게 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중에서 계속기업에 대한 판단과 보고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순위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표기되어진 세 집단의 그룹이 독립변수가 된다.

그리고 집단간의 희석효과를 보기 위한 종속변수로서는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할 것인지의 여부를 '기술한다'와 '기술하지 않는다' 중에서 선택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감사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특기사항의 기술여부가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5) 측정변수의 요약

이 논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연구가설별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독립변수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사용된다.

① 보고책임의 정도

(partner, manager, incharge는 높은 편, staff은 낮은 편으로 분류)

② 정보의 제시순서(--++혹은 ++--)

③ 감사인이 보고결정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해관계자집단

이를 통해 설계된 연구가설1과 2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집단은 4개의 집단이 구성된다.

g1(HA/--++) : 보고책임이 높으면서 부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높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해소사항(++)을 검토한 집단

g2(HA/++--) : 보고책임이 높으면서 긍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높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 해소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검토한 집단

g3(LA/--++) : 보고책임이 낮으면서 부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낮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해소사항(++)을 검토한 집단

g4(LA/++--) : 보고책임이 낮으면서 긍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낮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 해소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검토한 집단

그리고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집단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관계자 집단(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중 1순위로 표기한 집단이다 둘째, 종속변수는 다음 7가지이다.

- ① 기초판단(J0) : 기본정보에 의한 계속기업 존속확률
- ② 판단수정1(J1) : 기본정보+추가정보1(-또는+)에 의한 계속기업 존속확률
- ③ 판단수정2(J2) : 기본정보+추가정보1(-또는+)+추가정보2(-또는+)에 의한 계속기업 존속확률
- ④ 판단수정3(J3) : 기본정보+추가정보1(-또는+)+추가정보2(-또는+)+추가정보3(+또는-)에 의한 계속기업 존속확률
- ⑤ 판단수정4(J4) : 기본정보+추가정보1(-또는+)+추가정보2(-또는+)+추가정보3(+또는-)+추가정보4(+또는-)에

의한 계속기업의 존속확률

- ⑥ 재검토후의 판단값 : 기본정보에서 추가정보4가지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정한 계속기업의 존속확률
- ⑦ 보고여부 :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 기술여부
(기술한다 0, 기술하지 않는다 1)

위의 변수들을 이용한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사용된 통계적 분석방법은 가설의 유형 및 검증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실험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주로 t-test를 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이에 이용된 통계패키지는 SPSS 12.0 이다.

3. 실험설문의 내용과 절차

1) 실험설문의 내용

우선 피험자들에게 당해연도 감사실시과정에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기본정보(배경정보와 재무제표정보)를 제공하여 기초판단을 하도록 하고 감사대상회사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는 두 가지의 정보와 의문을 해소시키는 두 가지의 정보를 준 다음, 각 정보를 검토하여 회사의 존속능력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특기사항으로 기술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보고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실험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3부로 구성하여 피험자들에게 주어진 순서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제1부에서는 각 피험자(감사인)에게 감사대상회사의 기본정보로서 배경정보와 재무제표정보를 제공하였다.

기본정보에는 ① 회사의 개요

② 영업활동내용과 경제적 환경

③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

④ 과거 3년 동안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 ⑤ 과거 3개년 동안의 감사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 ⑥ 기본 재무비율분석 자료로 구성되어있다.

이상의 회사정보에 입각하여 피험자들에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기초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배경정보의 내용을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대상회사는 첨단 고부가가치 전자통신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당사는 사업 착수 5년 만에 안정적 수익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공정 및 설비관리 혁신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 공급량, 브랜드 등의 측면에서 세계적인 제조업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산업의 첨단화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는 연구개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해외공장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이미 구축된 시장에서는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지켜 나가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영업실적이 매우 악화되어 왔고, 이로 인한 재무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동종 산업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강한 내부회계 관리제도상에도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지난 과거 3년간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으며 지금까지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중요한 의문사항이 특기사항으로 보고된 적은 없다는 전제도 있었다.

이상의 기본정보를 제공한 후 감사대상회사가 금년도말까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가능성을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여기서 0%는 "존속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와 100%는 "존속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실험설문은 감사대상회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에 익숙하게 하고 각 피험자들이 계속기업의 존속에 대한 원초의 초기값 즉 현재의 신념이 되는 기준점을 결정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보고책임의 정도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져 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보고책임이다. 감사인의 입장에서의 보고책임이란 자신의 판단 및 보고결과에 대해 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그리고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등에게 감사대상회사의 감사결과에 대해 해명(결백, 변명, 정당화)하거나 사과

(민·형사상의 책임포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게 되는 책임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보고책임의 정도(보고 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과 낮은 감사인 집단)에 따라서 순서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설문문항이다.

부가적으로 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여부에 대한 판단과 보고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증권감독원)을 중요한 순서대로 표기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이 보고결정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제2부에서 각 피험자들에게 제1부의 기본정보에 의한 기초판단을 토대로 감사조서에서 나타난 4가지의 추가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이전에 인지된 정보와 각각 제시된 추가정보를 바탕으로 백분율에 의한 신념수정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번 판단을 내린 후에는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4가지 추가정보 가운데 두 가지 정보는 계속기업에 대한 의문사항(부정적 정보)이며 다른 두 가지 정보는 의문의 해소사항(긍정적 정보)이다. 계속기업으로서 존속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정적 정보로는

- ① 감사대상회사의 매출추이를 볼 때, 내수시장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출시장에서는 현저히 떨어져 시장점유율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
- ② 당기말 현재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로 제공되어진 채무, DA, DP 거래 등에 대한 미결제금액, 관계회사 및 관련회사와의 채무 등 100억원 정도의 우발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계속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정보로는 경영자 측에서 제시한 향후 계획으로

- ① 중국이 유해전자파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시행계획에 따라 피감사회사는 이미 품질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로 중국시장에 진출로 인해 매출액이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② 감사대상회사는 안정적인 경상이익의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차기의 부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당기 말 현재 보유 중인 토지 및 건물 등이 200억원 정도에 매각될 것이 확실시 되었으며, 차입금의 만기연장도 계획 중이라는 정보이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제1단계는 이상의 4 가지 정보를 실험집단에 따라 두 가지 순서로 제시되었다. 즉 하나의 실험 조건은 의문사항을 먼저 준 다음 의문해소사항을 제시하는 조건이며, 다른 하나는 동일한 정보를 그 역으로 의문해소사항 다음에 의문사항을 제시하는 조건이다. 혼합증거를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Einhorn & Hogarth 모형(1985, 1987)이 나중에 제시되는 정보가 부정적인지 긍정적 정보인지에 따라 예측한 최신효과를 비교적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2단계는 제1부에서 제시되어진 감사대상회사의 기본정보, 제2부에서 순차적으로 제시되었던 추가정보 4가지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감사대상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가능성을 재평가하여 백분율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는 실험집단간의 재검토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제3부에서는 위의 과정을 마친 다음 피험자에게 당해연도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의문사항을 특기사항으로 기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따라 보고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2) 실험절차

본 실험에서 사용할 실험과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설문지 작성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내용과 회계감사기준을 바탕으로 회계학 전공교수와 감사실무에 종사하는 공인회계사의 협조를 얻어 작성되었다.

제1차 예비조사는 본 실험의 피험자인 감사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5명을 대상으로 연구가능성을 탐색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판단과 보고에 대한 설문내용이 우리나라 감사 환경에서 적용가능한지의 일반성 여부
- ② 감사증거로 제시한 의문사항과 의문해소사항의 적합성여부
- ③ 설문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
- ④ 이해가능성 등이다.

본 실험은 2006년 11월 한 달 동안 실험대상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에서 실시하였다.

- ① 피험자는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부한다.
- ② 본 연구는 감사인 개개인의 판단과 보고결정에 관계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감사에 종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③ 연구결과의 해석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질문을 순서에 따라 답하도록 하고 한번 내린 판단은 수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와 해석

본 논문에서는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계속기업에 대한 판단과 감사보고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3장에서는 연구가설을 제시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제시된 각 가설에 대해 검증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해석하고자 한다.

1. 보고책임과 순서효과

보고책임과 순서효과와의 관계를 보기 위해 설계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1 정보의 제시순서에 따라 순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일관적 정보이든 혼합적 정보이든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경우 최종적인 판단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합당하나, 인간의 인지처리과정은 부정과 긍정 중 어떤 정보를 먼저 받고 나중에 받는냐, 그 정보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개인적 성향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판단 값이 달라지는 편이가 발생한다. 연구가설1은 정보제시순서(--++, ++--)에 따라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먼저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전문가집단에서는 정보의 제시순서에 따른 편이인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보기 위함이다. 다음의 <표4-1>은 정보의 제시순서에 따라 피험자들의 판단수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차이검증의 결과이다.

<표 4-1> 정보제시순서에 따른 판단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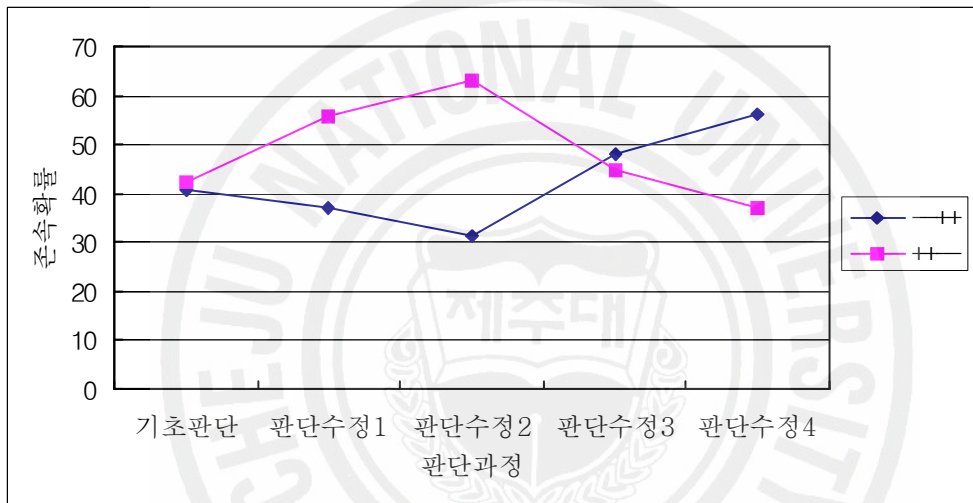
구 분		부정 선제시형 (--++)	긍정 선제시형 (++--)	t-value	유의확률
표 본 수		93	84		
기초판단 (J0)	평 균	40.65	42.50	-.692	0.490
	표 준 편 차	18.22	17.22		
	표 준 오 차	1.89	1.90		
판단수정1 (J1)	평 균	37.10	55.83	-7.007	0.000
	표 준 편 차	17.97	17.58		
	표 준 오 차	1.86	1.92		
판단수정2 (J2)	평 균	31.40	62.98	-10.990	0.000
	표 준 편 차	18.63	19.50		
	표 준 오 차	1.93	2.13		
판단수정3 (J3)	평 균	48.17	44.76	1.419	0.158
	표 준 편 차	17.30	14.85		
	표 준 오 차	1.78	1.62		
판단수정4 (J4)	평 균	56.24	37.02	7.508	0.000
	표 준 편 차	18.59	15.42		
	표 준 오 차	1.93	1.68		

부정 선제시형(--++)에서는 기초판단값(J0)을 기준으로 하여 부정적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는 수정된 판단값이 감소하고, 긍정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는 다시 판단값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긍정 선제시형(++--)인 경우는 기초판단값(J0)을 기준으로 하여 긍정적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는 증가하는 판단수정을 하고 부정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는 판단의 값이 감소하는 판단수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초판단값(J0)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정보 4가지에 대해 정보제시순서를 달리하여 판단수정(J1~J4)을 하도록 한 바 최종적인 계속기업의 존속확률의 값이 두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차적으로 정보를 제시할 경우 부정 선제시형(--++)인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의 존속확률을 56.24%로, 긍정 선제시형(++--)집단은 37.02%로 보고 있어 최종정보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4-1>은 <표 4-1>의 정보의 제시순서에 따른 기초판단에서부터 판단수정4에 이르는 각 단계의 집단별 판단평균값을 이용하여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처럼 물고기(fish)모양에서 최종 판단의 결과인 꼬리(tail)부분은 Einhorn & Hogarth (1985)의 주장한 바와 같이 혼합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때 대조가정(contrast assumption)으로 인하여 존재한다는 최신효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 정보의 제시순서에 따른 계속기업존속확률의 평균값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정보제시순서에 따라 분명히 최신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수적으로 계속기업에 대한 존속확률을 판단하는데 있어 기초판단값(J0)은 동일한 기본정보를 동일한 시점에 제공하여 판단을 내리도록 한 값으로 두 집단간 차이가 없다. 이는 기초정보에 대한 정보력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추가정보인 경우 동일한 정보를 제시순서만 달리하여 제공하더라도 그 정보에 대해서는 각각 동일한 방향으로 판단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추가로 제공되는 정보가 긍정적 정보는 정(+)의 가치로, 부정적 정보는 부(-)의 가치로서의 정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판단수정3만을 제외하고는 정보제시순서에 따른 판단수정의 평

평균값은 $p=0.000$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수정3인 경우는 한 집단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전환되면서 판단의 평균값($\nabla 18.21$)이 감소하고, 다른 집단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판단의 평균값이 증가($\Delta 16.77$)하고 있어 결국 두 집단의 판단평균값은 유사하게 되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차이를 평균값에 의한 비교보다는 판단변화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아 추가로 제공되어지는 정보제시순서에 따른 집단간 판단변화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4-2>는 기초판단 후에 추가정보 4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였을 때, 추가정보에 대한 판단의 변화(증가 혹은 감소)에 대한 요약 기술 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4-2> 정보제시순서에 따른 추가정보에 대한 판단변화

구분	부정 선제시형 (--++)	긍정 선제시형 (++--)	t-value	유의확률
표 본 수	93	84		
판단변화1	-3.54	13.33	-9.344	0.000
판단변화2	-5.70	7.14	-8.127	0.000
판단변화3	16.77	-18.21	15.327	0.000
판단변화4	8.06	-7.74	9.952	0.000
판단변화5	15.59	-5.48	8.509	0.000

주) 판단변화1 : 추가정보1에 의한 판단수정값 - 기초판단값(기준점)

판단변화2 : 추가정보2에 의한 판단수정값 - 추가정보1에 의한 판단수정값

판단변화3 : 추가정보3에 의한 판단수정값 - 추가정보2에 의한 판단수정값

판단변화4 : 추가정보4에 의한 판단수정값 - 추가정보3에 의한 판단수정값

판단변화5 : 추가정보4에 의한 판단수정값 - 기초판단값(기준점)

위의 표에서 보면 중간단계에서의 신념변화는 모두 $p=0.000$ 의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동일한 정보에 대해 정보의 제시순서에 의하

여 판단변화의 값이 감소와 증가의 경우가 체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정 선제시형(--++)인 경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가능여부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평균 -3.51과 -5.36으로 각각 감소하였고, 앞의 계속기업의 존속에 대한 부정적 정보 다음으로 긍정적 정보를 제시한 후에는 16.70과 7.84로 증가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위의 <표4-1>에서는 판단수정3 즉 긍정적(부정적) 정보에서 부정적(긍정적)으로 전환되어지는 시점에서의 판단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 놀람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동일한 긍정적 정보를 먼저 제시하여 판단하도록 한 값과 부정적 정보 다음에 제시하여 판단하도록 한 값과는 판단변화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동일한 부정적 정보를 먼저 제시되어지는 경우와 긍정적 정보의 다음에 제시될 경우(긍정적 정보에서 부정적 정보로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부(-)에 대한 놀람의 정도가 달라짐으로 인해 판단변화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감사인이 계속기업의 존속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보제시순서에 따라 최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1a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 내에서는 순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1b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 내에서는 순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1a와 1b를 검증하기 위해서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HA)집단과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LA)집단으로 구분하고 이 두 집단을 다시 정보의 제시순서를 달리하는 집단으로 2구분하여 실험집단을 총 4집단(g1~g4)으로 구성하였다.

g1 (HA/--++) : 보고책임이 높으면서 부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높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해소사항(++)을 검토한 집단

g2(HA/++--): 보고책임이 높으면서 긍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높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 해소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검토한 집단

g3(LA/--++): 보고책임이 낮으면서 부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낮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해소사항(++)을 검토한 집단

g4(LA/++--): 보고책임이 낮으면서 긍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낮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 해소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검토한 집단

연구가설1a는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g1과 g2)에서의 최신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연구가설1b는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g3과 g4)에서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4-3>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 정보제시순서에 따른 판단수정

구 분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t-value	유의확률
		부정 선제시형 (--++)	긍정 선제시형 (++--)		
표 본 수		58	43		
기초판단 (J0)	평균	37.76	41.16	-1.024	0.308
	표준편차	16.33	16.65		
	표준오차	2.14	2.54		
판단수정1 (J1)	평균	34.31	56.28	-6.606	0.000
	표준편차	15.80	17.05		
	표준오차	2.07	2.60		
판단수정2 (J2)	평균	29.14	62.79	-9.437	0.000
	표준편차	17.10	18.17		
	표준오차	2.24	2.77		
판단수정3 (J3)	평균	46.55	47.91	-0.386	0.700
	표준편차	17.33	17.53		
	표준오차	2.27	2.67		
판단수정4 (J4)	평균	53.97	39.30	3.957	0.000
	표준편차	18.73	18.17		
	표준오차	2.46	2.77		

(주)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 partner, manager, incharge 직급의 감사인.

<표4-3>은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g1과 g2) 내에서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분석한 결과이고 <표4-4>은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g3와 g4) 내에서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 내에서는 기본 정보라는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시점에서 기초판단(J0)을 하도록 한 결과 정보제시형(--++, ++--)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후 추가되는 정보에 대한 4차례의 판단수정을 한 결과 부정 선제시형(--++)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확률을 54.59%로, 긍정 선제시형(++--)인 경우에는 40.67%로 최근의 정보가 긍정적 정보인지 부정적 정보인지에 따라 두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에서도 최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여기에서 판단수정3은 부정적 정보에서 긍정적 정보로, 긍정적 정보에서 부정적 정보로의 전환시점으로 판단평균값은 차이가 없다. 하지만 부정적 정보에서 긍정적 정보로의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판단 변화분($\Delta 17.41$)이고 긍정적 정보에서 부정적 정보로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판단 변화분($\nabla 14.88$)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판단변화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t\text{-value} = 11.503, p=0.000$)

<표4-4>는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 내에서도 순서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분석한 표이다. 우선 기초판단에서는 동일한 기본정보만을 가지고 동일한 시점에서 판단하였으므로 정보제시형에 따른 차이는 없다. 대신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4가지의 정보에 대해서는 부정 선제시형과 긍정 선제시형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차이점은 판단수정3(J3)이다.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은 부정적(긍정적) 정보에서 긍정적(부정적) 정보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두 집단 간의 판단값에 차이가 없었으나,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에서는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정적 정보에서 긍정적 정보로의 전환시점의 증가값($\Delta 15.71$)과 긍정적 정보에서 부정적 정보로의 전환시점의

감소값(▽21.70)으로 보고책임이 낮은 경우에는 긍정적 정보에 대한 민감도에 비해 부정적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4-4>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 정보제시순서에 따른 판단수정

구 분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t-value	유의확률
		부정 선제시형 (--++)	긍정 선제시형 (++--)		
표 본 수		35	41		
기초판단 (J0)	평 균	45.43	43.90	0.341	0.734
	표준편차	20.34	18.29		
	표준오차	3.44	2.86		
판단수정1 (J1)	평 균	41.71	55.37	-3.038	0.003
	표준편차	20.51	18.32		
	표준오차	3.47	2.86		
판단수정2 (J2)	평 균	35.14	63.17	-5.851	0.000
	표준편차	20.63	21.03		
	표준오차	3.49	3.28		
판단수정3 (J3)	평 균	50.86	41.46	2.870	0.006
	표준편차	16.69	10.62		
	표준오차	2.82	1.66		
판단수정4 (J4)	평 균	60.00	34.63	7.161	0.000
	표준편차	17.99	11.64		
	표준오차	3.04	1.82		

(주)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 staff직급의 감사인.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 내에서 그리고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 내에서는 모두 정보제시형에 따른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인 경우에는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에 비해 긍정적 정보보다는 부정적 정보에 더 높은 민감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른 순서효과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보의 제시순서를 동일하게 한 경우, 보고책임이 높고 낮음이 계속기업의 존속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1c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과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 간에는 순서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1c는 동일한 정보제시형을 따를 경우에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과 낮은 감사인 집단간 즉 g1과 g3 간에 그리고 g2와 g4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4-5> 보고책임과 순서효과와의 관계 - 부정 선제시형(--++)

구분		부정 선제시형(--++)		t-value	유의확률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표본수		58	35		
기초판단 (J0)	평균	37.76	45.43	-1.893	0.063
	표준편차	16.33	20.34		
	표준오차	2.14	3.44		
판단수정1 (J1)	평균	34.31	41.71	-1.833	0.072
	표준편차	15.80	20.51		
	표준오차	2.07	3.47		
판단수정2 (J2)	평균	29.14	35.14	-1.448	0.153
	표준편차	17.09	20.63		
	표준오차	2.24	3.49		
판단수정3 (J3)	평균	46.55	50.86	-1.188	0.239
	표준편차	17.33	16.69		
	표준오차	2.27	2.82		
판단수정4 (J4)	평균	53.97	60.00	-1.543	0.127
	표준편차	18.73	17.99		
	표준오차	2.46	3.04		

(주)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 partner, manager, incharge직급의 감사인.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 staff직급의 감사인.

<표4-5>는 부정 선제시형(--++)을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g1)과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g3) 집단에게 제시하였을 경우 두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표이다.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기초판단(J0)를 비롯하여 이후의 추가정보에 대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정 선제시형(--++)인 경우에는 보고책임의 높고 낮음에 따른 최신효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

다.

그렇다면 긍정 선제시형(++--)인 경우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표4-6>은 긍정 선제시형(++--)을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g2)과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g4)에게 제시하였을 경우 두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표이다.

<표 4-6> 보고책임과 순서효과와의 관계 - 긍정 선제시형(++--)

구 분		긍정 선제시형 (++ --)		t-value	유의확률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표 본 수		43	41		
기초판단 (J0)	평 균	41.16	43.90	-0.717	0.475
	표준편차	16.65	18.29		
	표준오차	2.54	2.86		
판단수정1 (J1)	평 균	56.28	55.37	0.236	0.814
	표준편차	17.05	18.32		
	표준오차	2.60	2.86		
판단수정2 (J2)	평 균	62.79	63.17	-0.088	0.930
	표준편차	18.17	21.03		
	표준오차	2.77	3.28		
판단수정3 (J3)	평 균	47.91	41.46	2.048	0.044
	표준편차	17.53	10.62		
	표준오차	2.67	1.66		
판단수정4 (J4)	평 균	39.30	34.63	1.408	0.163
	표준편차	18.18	11.64		
	표준오차	2.77	1.82		

(주)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 partner, manager, incharge 직급의 감사인.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 staff 직급의 감사인.

긍정 선제시형(++--)인 경우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과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동일한 기본정보에 대한 기초판단과 긍정적인 정보 2개를 제시할 때까지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긍정적 정보에서 부정적 정보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부터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과 낮은 감사인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 결과는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에 비해서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은 긍정적 정보의

뒤를 이은 부정적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정보에서 부정적 정보로 전환되고 이어 또 하나의 부정적 정보를 제공받음으로 인해 부정적 정보에 대한 놀람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처음보다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판단을 부정적으로 결론짓고 있으나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른 순서효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구가설1c인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른 순서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연구가설1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속기업에 대한 존속확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제시순서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최신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과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두 집단 모두에게서 최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른 순서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긍정선 제시형(++--)인 경우에는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에 비해서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이 부정적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아 더 낮은 존속확률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합당하나, 인간의 인지처리과정은 정보의 형태, 강도, 정보에 대한 개인적 성향 등의 요인들로 인해 동일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판단의 결과가 달라지는 편이가 발생한다. 이는 전문가집단인 감사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편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로는 순서효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이 개정되면서 계속기업의 존속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급에 상관없이 감사인들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2. 보고책임과 재검토효과

본 논문에서 우선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정보를 가지고 계속기업의 존속확률

을 판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정보의 제시순서에 따라 최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은 연구가설1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라는 편익은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 중의 하나로 정보의 통합 즉 종합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 재검토인 경우 시간은 투자가 되어지지만 별 다른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편익을 제거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속기업의 존속여부를 보고하기 전 마지막 단계로서 이미 제공된 기본정보와 4가지의 추가정보 모두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여 계속기업의 존속확률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재검토가 최신효과를 감소시키는 지의 여부와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라 재검토 전·후의 판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가설2 재검토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순서효과가 감소될 것이다.

<표 4-7> 순차적 제시방법과 재검토와의 관계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표준오차	t-value	유의확률
판단수정4	--++	93	56.24	18.59	1.93	7.508	0.000
	++--	84	37.02	15.43	1.68		
재검토	--++	93	50.11	19.02	1.97	1.139	0.256
	++--	84	47.02	16.99	1.85		

<표4-7>에서는 순차적 제시방법에서의 최종판단값(J4)과 재검토를 행한 후의 판단값을 비교해 놓은 표이다.

순차적 제시방법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지시하였을 때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확률이 부정 선제시형(--++) 경우에는 56.24%이고 긍정 선제시형(++--)인 경우는 37.02%로 두 집단간 존속확률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재검토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부정선제시형(--++) 집단이 50.11%,

긍정 선제시형(++--)집단은 47.02%로 집단간 존속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검토는 정보의 제시순서를 달리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순차적 제시방법에서 발생하는 최신효과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4-8>은 부정 선제시형(--++)집단과 긍정 선제시형(++--)집단이 어떠한 판단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4-8> 정보제시별 재검토후의 판단변화

판단변화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표준오차	t-value	유의확률
--++	93	-6.13	11.71	1.21	-10.493	0.000
++--	84	10.00	8.64	0.94		
판단변화의 값은 순차적 제시방법의 최종값인 판단수정4의 판단평균값과 재검토 후의 판단평균값의 차이로 재검토하기 이전과 이후의 판단변화분.						

부정 선제시형(--++) 집단은 최종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를 갖고 판단한 후 재검토를 행한 것으로 재검토후에는 판단변화의 값이 감소(▽6.50) 되고, 긍정 선제시형(++--)집단은 최종적인 정보가 부정적인 정보를 갖고 판단한 후 재검토를 행한 것으로 재검토 한 후에는 판단변화의 값이 큰 쪽으로 증가(△10.00)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두 집단이 재검토를 행함으로써 인해 순차적 제시방법에 의한 최종판단값(J4)을 증가와 감소로 조정함으로써 재검토전에는 두 집단 간에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확률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지만, 재검토를 행한 후에는 두 집단 간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확률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재검토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가설2a와 2b는 재검토를 행하였을 경우에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에서 나타난 순서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는지와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에서 보인 최신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함이다.

연구가설2a 재검토를 행하였을 경우,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 내에서는 순서효과가 감소될 것이다.

연구가설2a인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g1과 g2)집단 내에서 정보의 제시순서를 달리하여 판단하도록 한 후의 판단수정4(J4)의 값과 재검토를 행한 후에 새로운 판단값을 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즉 재검토하기 이전의 판단값과 이후의 판단값을 비교해봄으로써 재검토의 효과를 알 수 있다.

g1(HA/--++) : 보고책임이 높으면서 부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높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해소사항(++)을 검토한 집단

g2(HA/++--) : 보고책임이 높으면서 긍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높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 해소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검토한 집단

g3(LA/--++) : 보고책임이 낮으면서 부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낮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해소사항(++)을 검토한 집단

g4(LA/++--) : 보고책임이 낮으면서 긍정 선제시형 집단

보고책임 낮은 집단으로, 두 가지의 의문 해소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 두 가지의 의문사항(--)을 검토한 집단

다음 <표4-9>와 <표4-10>은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g1과 g2) 집단 내의 재검토 효과를 t-test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4-9>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내의 재검토효과

구 분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판단수정4		재검토	
	--++	++--	--++	++--
표본수	58	43	58	43
평균값	53.97	39.30	47.93	47.67
표준편차	18.73	18.18	19.08	18.75
표준오차	2.46	2.77	2.51	2.86
t-value	3.957		0.067	
유의수준	0.000		0.946	

(주)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 partner, manager, incharge직급의 감사인.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 staff직급의 감사인.

<표 4-10>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내 재검토후의 판단변화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표준오차	t-value	유의확률
--++	58	-6.03	12.56	1.65	-7.071	0.000
++--	43	8.37	7.85	1.20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g1과 g2) 집단내의 재검토효과를 보면, 순차적 정보처리과정에 의한 최종적 판단값인 판단수정4(J4)는 나중에 제시한 정보의 영향을 받는 최신효과가 있음을 연구가설1a에서도 밝혀졌다. 이 두 집단에게 재검토를 행하게 한 결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확률에 대해서 보고책임이 높으면서 부정선제시형 집단은 감소($\nabla 6.03$)의 판단변화를, 보고책임이 높으면서 긍정선제시형인 경우는 증가($\Delta 8.37$)의 판단변화가 이루어진 결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확률의 값이 각각 47.93%와 47.67%로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순차적 정보제시방법을 따를 경우 최근정보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재검토를 행함으로 인해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가 섞임으로써 개별적 영향력이 줄어들어 최근정보가 희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검토가 정보제시순서에 따른 최신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가설2b 재검토를 행하였을 경우,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 내에서는 순서효과가 감소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가설2b는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g3과 g4) 집단 내에서 정보의 제시순서를 달리하여 판단이 완료된 후에 재검토를 행하게 하여 판단값을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재검토하기 이전의 판단값과 이후의 판단값을 비교해봄으로써 재검토의 효과를 알 수 있다. 이를 분석해 놓은 결과는 다음 <표4-11>과 <4-12>이다.

<표4-11>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내의 재검토효과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판단수정4		재검토	
	--++	++--	--++	++--
표본수	35	41	35	41
평균값	60.00	34.63	53.71	46.34
표준편차	17.99	11.64	18.64	15.13
표준오차	3.04	1.82	3.15	2.36
t-value	7.161		1.872	
유의수준	0.000		0.066	

(주)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 partner, manager, incharge 직급의 감사인.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 staff 직급의 감사인.

<표 4-12>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 내 재검토후의 판단변화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표준오차	t-value	유의확률
--++	35	-6.29	10.31	1.74	-7.967	0.000
++--	41	11.70	9.19	1.44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에서는 순차적 정보제시방법에 의한 최종적 판단값인 판단수정4(J4)은 두 집단 모두 최근정보의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어 최신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연구가설1b에서 검증되었다. 이에 대한 최신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재검토를 행한 결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확

를에 두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인 차이($p=0.066$)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인 경우에는 재검토의 효과가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에 비해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고책임이 낮은 경우에는 재검토를 해야 하는 필요성의 인식과 교육 등을 통한 경험축적 그리고 다른 동기부여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는 보고책임이 동일한 집단 내에서 증거의 제시순서를 달리하였을 때 나타나는 최신효과를 재검토로 인하여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 연구가설2c에서는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른 판단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한 정보제시형을 따를 경우에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과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간 재검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봄으로써 보고책임이 재검토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가설2c 재검토를 행하였을 경우,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과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 간에는 판단의 일관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음 <표4-13>은 연구가설2c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결과이다. 재검토를 행하였을 때와 순차적인 판단과정을 하였을 때를 보고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보기 위함이다. 즉 부정 선제시형(--++)이면서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g1)집단과 낮은 감사인(g3) 집단간의 차이, 그리고 긍정선제시형(++--)이면서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g2) 집단과 낮은 감사인(g4)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보고책임과 재검토와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결과를 보면, 두 집단 모두 순차적 정보제시방법을 통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확률에 대한 판단결과에 대해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검토를 행한 결과 또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정 선제시형인 경우에는 재검토를 행한 결과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확률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재검토는 나중에 제시된 정보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진다.

<표 4-13> 보고책임과 재검토와의 관계

구 분		--++		++--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표본수		58	35	43	41
판단수정4	평균	53.97	60.00	39.30	34.63
	표준편차	18.73	17.99	18.18	11.64
	표준오차	2.46	3.04	2.77	1.82
t-value(유의수준)		-1.543(p=0.127)		1.408(p=0.163)	
재검토	평균	47.93	53.71	47.67	46.34
	표준편차	19.08	18.64	18.75	15.13
	표준오차	2.51	3.15	2.86	2.36
t-value(유의수준)		-1.437(p=0.155)		0.359(p=0.720)	
판단변화분	평균	-6.03	-6.29	8.37	11.71
	표준편차	12.56	10.31	7.85	9.19
	표준오차	1.65	1.74	1.20	1.44
t-value(유의수준)		0.105(p=0.917)		-1.784(0.078)	

(주)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 partner, manager, incharge 직급의 감사인.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 staff 직급의 감사인.

연구가설2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의 제시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최신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재검토를 한 결과 최신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정보의 개별적인 영향력이 판단을 하는데 크게 반영이 된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를 섞어버림으로 인해서 이들 정보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상쇄된다. 따라서 재검토는 순차적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순서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라 재검토하기 이전과 이후의 판단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구가설1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고책임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감사인에게 보고책임이 강화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본다.

3. 보고책임과 보고상 희석효과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계속기업 존속여부에 의문사항이 존재할 경우 이 의문사항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의문의 해소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보고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된다.

연구가설3 감사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특기사항 기술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감사인은 감사의뢰인, 투자자와 채권자,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감사인은 계속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사항을 특기사항으로 보고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감사인은 이들 상호간의 이해조정과 보고책임으로 인해 계속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비목적적합한 변수(이해조정과 보고책임)가 오히려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를 희석시켜 보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설문에 응답한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계속기업에 대한 존속여부를 판단하고 보고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집단 중 중요한 순서(1, 2, 3)대로 표기하여 응답하도록 한 결과가 <표4-14>와 같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은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감사보고서의 영향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으로 구분을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투자자와 채권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수가 185중 109명이 답하였고, 다음으로 규제기관인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감사의뢰인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응답현황

	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계
1순위	35	109	41	185
2순위	55	51	79	185
3순위	95	25	65	185

연구가설 3은 표본의 수를 고려하여 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피험자를 중심으로 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계속기업에 대한 존속확률을 기본정보에 의한 기초판단에서부터 재검토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판단과정이 완료되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확률의 값을 결정지었다. 판단을 마친 결과 당해연도 감사보고서에 의문사항을 특기사항으로 기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문에서 요구하였다.

따라서 감사인이 계속기업에 대한 존속여부를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해관계자 집단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5>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고책임과 보고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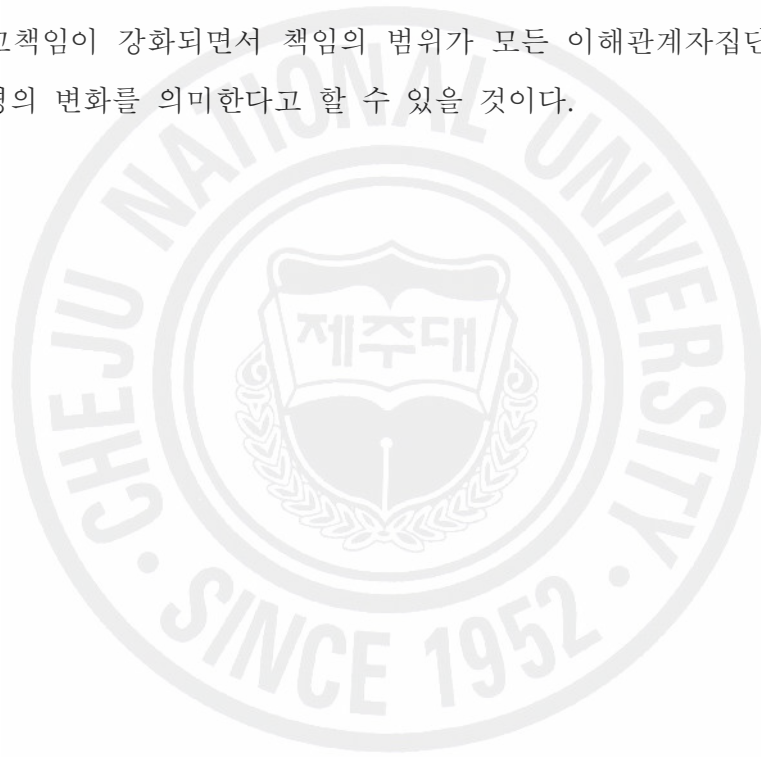
기술여부		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전체
기술한다	실제빈도	23.00	80.00	32.00	135.00
	기대빈도	25.54	79.54	29.92	135.00
	전체 %	12.43	43.24	17.30	72.97
기술하지 않는다.	실제빈도	12.00	29.00	9.00	50.00
	기대빈도	9.46	29.46	11.08	50.00
	전체 %	6.49	15.68	4.86	27.03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4804	2	0.4770	
우도비	1.4591	2	0.4821	
선형 대 선형결합	1.4209	1	0.2332	
유효 케이스 수	185			

분석결과 <표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고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집단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확률을 판단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관계자 집단 중 대부분이 투자자 및 채권자로 보고 있다. 이는 감사보고서에 반영을 할 때 이들 집단의 경제적 실패와 감사인의 감사실패를 가져오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 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도산이나 분식회계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책임 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강화되면서 책임의 범위가 모든 이해관계자집단으로 확대된 감사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회계감사에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고 보고결정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계속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보고로 인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 감사대상회사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회적인 파급효과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책임 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Einhorn & Hogarth(1985,1987)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감사인이 계속기업가정에 대해 판단하고 보고과정에서 최신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판단상에 체계적인 편의에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제시순서에 따라 최신효과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과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 내에서는 최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내야 하나, 인간의 인지처리과정은 정보의 형태, 강도, 정보에 대한 개인적 성향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동일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판단결과가 달라지는 편이가 발생한다. 이는 전문가집단인 감사의 편의에 대한 연구결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과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간 최신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선제시형(++--)인 경우에는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에 비해서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이 부정적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아 더 낮은 존속확률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이 개정되면서 계속기업의 존속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급에 상관없이 감사인들이 강화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최신효과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재검토를 행하였을 경우, 순서효과가 감소되는 지의 여부와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라 재검토를 행하기 이전과 이후의 판단 값에 차이가 있는 지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의 제시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최신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재검토를 한 결과 최신효과를 감소시켰다. 재검토는 순차적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최신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른 재검토하기 이전과 이후의 판단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구가설1에서 설명한 것처럼 감사인의 보고책임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감사인에게 보고책임이 강화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본다.

셋째, 감사인이 감사의뢰인, 투자자와 채권자,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중 어떠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의문사항이 존재할 경우 이를 특기사항으로 보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해관계자와 계속기업에 대한 의문사항을 특기사항으로 기술할 것인지의 여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확률을 판단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관계자 집단 중 대부분이 투자자 및 채권자로 보고 있다. 이는 감사보고서에 반영을 할 때 이들 집단의 경제적 실패와 감사인의 감사실패를 가져오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 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도산이나 분식회계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책임 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강화되면서 책임의 범위가 모든 이해관계자집단으로 확대된 감사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그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실행계획 및 기타요소들을 검토한 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순

차적인 정보처리과정에 따른 판단으로 인하여 최근효과라는 편의가 발생한다고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이는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이 개정되면서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책임과 감사인의 보고책임을 강화됨으로 인해 편의가 감소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자기설명, 자기지시효과, 정당화요구 등의 방법으로 최신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재검토는 최신효과를 감소시키는 방안중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 집단인 경우에는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집단에 비해 긍정적 정보의 뒤를 따르는 부정적 정보에 대해 높은 민감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보고책임이 낮은 경우에는 재검토를 해야 하는 필요성의 인식과 교육 등을 통한 경험축적 그리고 다른 동기부여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감사환경의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들의 도산이나 분식회계 등의 사건 등 사회적 환경에 때문에 계속기업의 가정에 대한 평가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 이로 인해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책임 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구체화되고 강화된 감사환경으로 변화되었다. 감사인의 책임범위도 과거에는 감사의뢰인 즉 고객 지향적으로 감사를 수행하였다면 현재는 투자자 및 채권자 뿐만 아니라 전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도 올바른 회계문화가 정착이 되고, 감사인의 의사결정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Einhorn & Hogarth(1985, 1987)에 의해 제시된 신념수정 모형을 이용하여 계속기업의 존속여부를 판단하고 보고결정을 과업변수의 영향을 설문실험연구를 하였다. 이 실험연구는 실제의 감사상황에 비해 매우 단순화된 상황을 설정하고 실험설계상 한정된 가정에 입각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적 타당성의 문제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더 정교한 실험설계를 필요로 한다. 그 외 본 논문에 대한 기타 한계점과 추후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보를 순차적인 제시방법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순서효과 중 최신효과를 나타냈다. 정보의 제시순서에 의한 것 이외에도 혼합적 정보에 대해 최신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고책임에 대한 범위이다. 본 논문에서는 partner, manager, incharge 직급은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 staff의 직급은 보고책임 낮은 감사인으로 구분하여 실험연구 행해졌다. 이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조직내부에서의 보고책임과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보고책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책임의 정도에 따른 집단 구분을 좀 더 구체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사인이 의견결정을 할 때,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드백의 수단(예를 들면, 금전보상, 휴가보상, 처벌 등), 전문가의 기술과 지식, 시간압박의 역할 등에 의해 정보의 순차적 제시방법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고성효,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과 보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3.
- _____, "감사인의 계속기업보고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제7집, 제주대
학교 관광산업연구소, 1993.
- _____, "Einhorn & Hogarth모델이 감사인판단과 의사결정에서의 적용",
「사회발전연구」 제9집,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1993.
- 권치환, "최근경험효과에 대한 규명책임의 희석화효과", 「회계학연구」, 제6
호, p.191-213.
- 김동철, "프로스펙트이론과 행동회계학 접근방법에 의한 관리회계 연구", 「관
리회계연구」, 제3권 제1호 2003. 6. p.48-51
- 김충수, "감사인의 신념수정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과 보고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95.
- 박정대, 박해남, "감사인의 불확실성에 예측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16
권 제1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p.258.
- 배정홍, "감사인의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2호, 2006년, p.585-601.
- 손성규, 계속기업 의문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표명의 자체예연실현효과", 「회
계저널」, 제14권 제2호 2005.6월, p.169-190.
- 이형권, "회계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최신효과와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8 No. 4, 2003, pp.135-166.
- 이성호, "회계행위연구의 현주소와 향후의 연구방향", 「회계학연구」 제14
호, 한국회계학회, 1992.7.
- 이윤권, 박홍철, "계속기업 의문 특기사항의 정보효과", 「회계저널」, 제12권
2003, p.87-105.
- 이점영, 한진수, "의사결정지원도구가 감사인의 판단합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002, p.173-198.
- 조화준, "정보의 제시순서가 회계감사인의 내부통제위험판단에 미치는 영향:
시간의 제약과 응답요구방식을 제한조건으로 둔 경우", 「회계학연
구」 제16호, 한국회계학회, 1993.7.
- 조화준, "정보의 제시순서가 회계감사인의 내부통제위험 판단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16호, 1993, pp.383-408.

홍정화, "행동회계연구의 태동 및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2권, 제1호, 2001. 11월, p31-50.

<국외문헌>

Andrew D. Cuccia and Gary A. Mc Gill "The Role of Decision Strategies in Understanding Professionals' Susceptibility to Judgment Bias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8, 2000, p.419-435.

Asare, S .K., The Auditors' Going Concern Opinion Decision: A Review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orking Paper, University of Florida, (January 1990).

_____, "The Auditors' Going Concern Opinion Decision: Interaction of Task Variables and the Sequential Processing of Evidence," Accounting Review (April 1992) and Ph.D. Dissertation Uni. of Arizona, (1989).

Ashton, R. H., "An Experimental Study of Internal Control Judge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Spring), 1974.

_____, "Effect of justification and a Mechanical Aid on Judgment Performance." Organization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2, 1992, pp.292-306.

Ashton, Alison H. and Robert H. Ashton "Sequential Belief Revision in Auditing", The Accounting Review, 63, 1988, p.623-641.

_____, "Evidence-Responsiveness in Professional Judgment: Effects of Positive Versus Negative Evidence and presentation Mod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June, 1990), 46, p.1-19.

Ashton, R. H., Kleinmuntz, D. N., Sullivan, J. B. and Tomassini, L. A., "Audit Decison Making," ed. AAA, Research Opportunities in Auditing: The Second Decade(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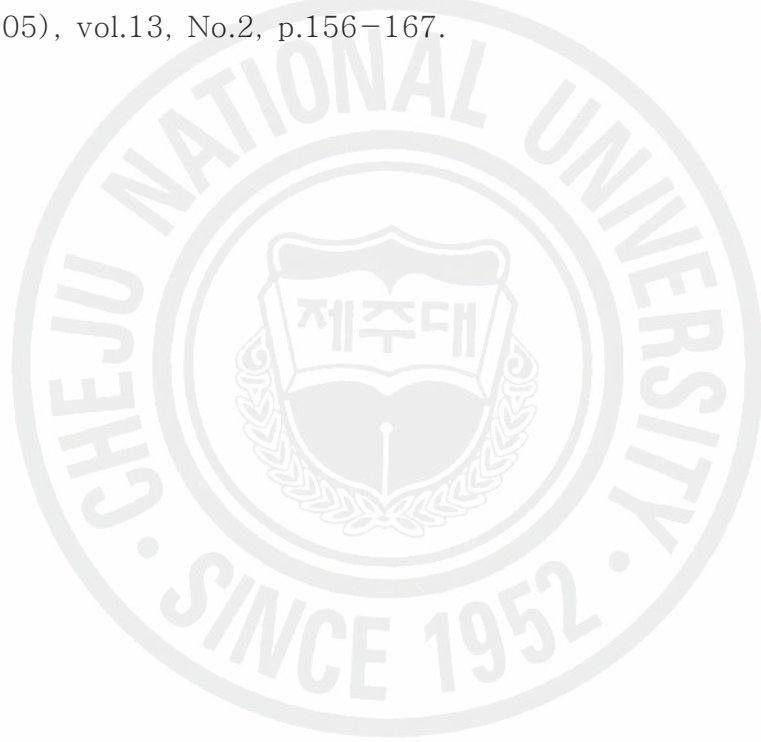
Ashton, Robert H. and Kennedy, Jane., "Eliminating Recency with Self-review : the case of Auditors' 'Going Concern' Judgement",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5, 2002, p.221~231.

- Butt, J.L. and Campbell, T.L., "The Effects of Information Order and Hypothesis Testing Strategies on Auditors' Judgement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14 (1989).
- Buchman, T. A., Tetlock, P. E., Reed, R. o., "Accountability and Auditors' Judgement about Contingent Event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Co, 1989.
- Behn, B. K., Kaplan, S. E., and Krumwiede, K. R. "Further Evidence on the Auditor's Going Concern Report: The Influence of Management Plan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0 , 2001, p.13–27.
- Cuccia, Andrew D. A. and Gary, A. MC. Gill, "The Role of Decision Strategies in Understanding Professionals' Susceptibility to Judgment Bias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8(2), 2000. p.419–435
- Dillard, Jesse F., N. Leroy Kauffman and Eric E. Spires, "Evidence Order and Belief Revision in Management Accounting Decision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7, 1991, p.619–633
- Einhorn H. J. and R. M. Hogarth "Confidence in Judgement: Persistence of the Illusion of Validity," Psychological Review (September 1978).
- Einhorn H. J. and R. M. Hogarth "Behavioral Decision Theory: Processes of Judgement and Choi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981).
- Einhorn H. J. and R. M. Hogarth "A Contrast/Surprise Model for Updating Belief,"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hicago, (April 1985).
- _____, "Adaptation Inertia in Belief Updating: The Contrast/Inertia Model,"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hicago, (October 1987).
- Einhorn H. J. and R. M. Hogarth "Order Effects in Belief Updating : The Contrast–Inertia Model', Unpublished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hicago, November, 1988.

- Emby, C., and Gibbins, M., "Good Judgement in Public Accounting: Quality and Justificat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Spring), 1988.
- _____, "Evidence on the Nature of Professional Judgement in Public Accounting." Auditing Research Symposium 1984.
- Hogarth, Robin M, and Hillel J. Einhorn, "Order Effects in Belief Updating: the Belief Adjustment Model" Cognitive Psychology, 24, 1992, p.1–55.
- Hackenbrack, K., "Assessing a Company's Exposure to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Implication of Seemingly Irrelevant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Spring), 1992.
- Joyce, E. J., and G. C. Biddle, "Anchoring and Adjustment in Probabilistic Inference in Audit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984), p.332–340.
- J. Pfeffer, "Management as Symbolic Action :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Organizational Paradigm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3, 981, pp.641–653.
- J. Kennedy, "Debiasing Audit Judgement with Accountability: A Framework and Experimental Resul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1, Autumn 1993, pp.231–245.
- Kennedy, D. B, and W. H. Shaw, "Evaluating Financial Distress Resolution Using Prior Audit Opinion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8, 1991, pp.97–114.
- Koonce, Lisa., "Explanation and Counterexplanation during Audit Analytical Review", The Accounting Review., 67(1), 1992, p.59~76.
- Lewis, B., M. Shields and M. Young, "Evaluating Human Judgments and Decision Aid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1, 1983, p.271–285.
- Lord, A. t., "Pressure: A Methodological for Behavioral Research in Auditing." Auditing: Journal of Practice & Theory(Fall), 1992
- Messier, William F. Jr., and Richard Tubbs, "Mitigating Recency Effects in Belief Revision: the Impact of Audit Experience and the Review Proces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Spring, 1994, p. 57–72.

- Messier Jr., W. F., & Quilliam, W. C., "The Effect of Accountability on Judgement: Development of Hypotheses for Auditing", Auditing: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11 Supplement, 1992.
- Mutchler, J., "Auditor's Perception of Going Concern Opinion,"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Spring 1984), p.17~30.
- _____, "A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Auditor's Going Concern Opinion Decision,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85).
- McMackin, John and Paul Slovic, "When Does Explicit Justification Impair Decision Making?"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4, 2000, p.527–541.
- P. E. Tetlock, "Accountability: The Neglected Social Context of Judgement and Choice." In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7), eds. B. M. Staw and L. Cummings. Greenwich ct: JAI Press, 1985.
- _____, "Toward an Intuitive Politician Model of the Attribution Process." In the Self and Social Life, ed. B. R. Schlenker. New York: McGraw–Hill. 1985.
- P. E. Tetlock, and J. I. Kim, "Accountability and Judgement Processes in a Personality Prediction Ta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987, pp.700–709.
- Rutledge, Robert W. " The Ability to Moderate Recency Effects through Framing of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7(1), 1995, p.27–40.
- Smith, J. F. and Kida, T., "Heuristics and Biases: Expertise and Task Realism in Auditing." Psychological Bulletin(May), 1991.
- Schlenker, B. R., "Personal Accountability : Challenges and Impediments in the Quest for Excellence Report for Navy Personne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1986.
- I. Simonson, and P.Nye, "The Effect of Accountability on Susceptibility to Decision Error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1, 1992, pp.416–446.
- Tubbs, Richard M. William F. Messier and W. Robert Knechel, "Recency Effects in the Auditors' Belief–Revision Process", The Accounting Review, 65, 1990, pp.452–460.

- Tetlock & Boettger, R., "Accountability: A Social Magnifier of the Dilu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September), 1990.
- Tucker, R. R., Matsumura, E. M., and Subramanyam. K. R. "Going Concern Judgements: An Experimental Test of the Self Fulfilling Prophecy and Forecast Accuracy,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2, 2003, p.401-432.
- Walter Masocha and Pauline Weetman, "Corporate Governance: Shifting Accountability for "Going Concern" Assurance", Corporate Governance-An International Review (March, 2005), vol.13, No.2, p.156-167.



<부록> 설 문 지 (A형)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감사대상회사의 계속기업에 대한 판단 및 의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을 응답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570) 및 적용지침에서의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시 감사의견에 관한 다음 규정이 유효함을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시부터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관한 증거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나 상황이 파악되는 경우, 유의적인 의문의 해소에 필요한 회사의 제반 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가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정의견을 표명하되 특기사항문단을 추가하여 감사보고서를 변형시켜야 합니다.」

본 설문은 독립적인 전문 감사인으로서 개인적 판단과 이에 따른 의견결정의 과정을 연구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와 본 설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며, 다른 참가자에 의해 귀하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감사인으로서 개인적인 경험에 입각하여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질문의 순서에 따라 행하여 주시고 한번 내린 판단은 수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또한 집단적인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 10.

지도교수 : 고성효 교수님

제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허 예 순 드림

(문의사항 : hysoon1711@yahoo.co.kr)

제 1 부

1. 일반정보

1) 회사의 개요

- (1) 회사명 : PK(주)
- (2) 설립일 : 1975년 1월 1일
- (3) 상장일 : 1985년
- (4) 주사업 : 전자기기 부품 제조판매업
- (5) 주주현황 : 2005년말 현재
창업주 외(45%), 자기주식(8%) 기타(47%)
- (6) 종업원수 : 200명
- (7) 사업소개 : PK(주)는 첨단 고부가가치 전자통신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당사는 사업 착수 5년만에 안정적 수익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공정 및 설비 관리 혁신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 공급량, 브랜드 등의 측면에서 세계적인 제조업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산업의 첨단화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는 연구개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해외공장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이미 구축된 시장에서는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지켜 나가고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대한 질문, 관련문서의 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등 검토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PK(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PK(주)는 2002년에서 2004년 동안 감사를 수행한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계속기업의 존속에 대한 중요한 의문이 제기되어 이 사실이 특기사항으로 보고된 적은 없다.

PK(주)의 2002년~2005년 동안의 요약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기본 재무비율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요약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PK(주) 12월31일 현재 (단위: 백만원)

	2005	2004	2003	2002
유동자산	19,620	29,650	27,570	32,700
당좌자산	13,560	16,050	15,150	16,650
채고자산	6,060	13,600	12,420	16,050
고정자산	40,680	57,850	71,720	80,460
투자자산	17,400	25,700	33,850	35,800
유형자산	23,255	32,100	37,800	44,570
무형자산	25	50	70	90
자산총계	60,300	87,500	99,290	113,160
유동부채	41,110	46,500	40,940	32,640
고정부채	7,800	7,900	5,350	5,160
부채총계	48,910	54,400	46,290	37,800
자본금	6,000	6,000	6,000	6,000
자본잉여금	24,000	21,000	21,700	21,600
이익잉여금(결손금)	(18,610)	6,100	25,300	47,760
자본총계	11,390	33,100	53,000	75,360
부채와 자본총계	60,300	87,500	99,290	113,160

손익계산서
 PK(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단위: 백만원)

	2005	2004	2003	2002
매출액	52,350	82,490	85,400	114,440
매출원가	53,750	77,600	83,500	93,130
매출총이익	(1,400)	4,890	1,900	21,310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7,460	18,090	19,300	22,180
영업이익(손실)	(18,860)	(13,200)	(17,400)	(870)
영업외수익	11,830	6,300	4,620	5,680
영업외비용	17,660	13,100	8,390	11,300
경상이익(손실)	(24,690)	(20,000)	(21,170)	(6,490)
특별이익	-	1,000	-	-
법인세비용	-	-	(1,260)	1,800
당기순이익(손실)	(24,690)	(19,000)	(22,430)	(4,690)

(2) 기본 재무비율 분석자료

년도 비율	2005	2004	2003	2002
당좌비율	33%	35%	37%	51%

년도 비율	2005	2004	2003	2002
유동비율	48%	64%	67%	100%

년도 비율	2005	2004	2003	2002
부채비율	429%	164%	87%	50%

년도 비율	2005	2004	2003	2002
고정비율	357%	175%	135%	107%

년도 비율	2005	2004	2003	2002
자기자본 이익률(ROE)	-217%	-57%	-42%	-6%

년도 비율	2005	2004	2003	2002
총자산이익률	-299%	-492%	-474%	-480%

년도 비율	2005	2004	2003	2002
재고자산 회전율	5.3회	6.3회	6.0회	7.1회

3. 보고책임과 기초판단

3-1. 보고책임에 대한 사항

(1) 고객(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 및 보고결과에 대해 져야 하는 책임을 보고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그리고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등에게 피감사회사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해명(결백, 변명, 정당화)하거나 사과(민·형사상의 책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감사인 책임정도를 말합니다.

감사의뢰인, 투자자 및 채권자, 그리고 증권감독원의 감리기관 등에게 피감사회사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해명(결백, 변명, 정당화)하거나 사과(민·형사상의 책임)를 해야 하는 책임의 정도인 보고책임이 귀하께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높은 편이다. () ② 낮은 편이다.()

(2) 계속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중요한 의문사항을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보고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귀하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대상에 대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1, 2, 3)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감사의뢰인 _____ ② 투자자 및 채권자 _____ ③ 증권감독원이 감리기관 _____

3-2. 기초판단

일반정보와 재무제표정보만 가지고 볼 때 귀하께서는 PK(주)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판단을 다음에 주어진 백분율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존속되지										존속하게
않을것이										될 것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제 2 부

1. 추가정보에 의한 기초판단의 수정

제2부에서 귀하께서는 PK(주)에 대한 수집된 4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순차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성 여부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를 조사하여 수집한 정보입니다.

주어진 4가지 추가정보에 대한 판단은 순서대로 각각 수행하시고, 한번 판단한 것은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가정보1] PK(주)는 4개년의 매출추이를 보았을 때, 내수시장에서는 70억 정도선을 유지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출시장에서는 2002년의 1,1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05년에는 450억원까지 현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시장점유율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1부 정보 및 추가정보 1만을 가지고 볼 때 귀하께서는 PK(주)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판단을 다음에 주어진 백분율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존속되지 않을것이 확실하다											존속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추가정보1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추가정보2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2] PK(주)는 당기 말 현재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로 제공되어진 채무, DA, DP 거래 및 매입할인 받은 것에 대한 미결제금액, 관계회사 및 관련회사와의 채무 등 100억원 정도의 우발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부 정보 및 추가정보 1,2만을 가지고 볼 때 귀하께서는 PK(주)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판단을 다음에 주어진 백분율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존속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추가정보2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추가정보3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3] 중국이 유해전자파에 대한 규제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귀사는 품질승인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라서 중국기업은 물론 중국에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전자정보통신기 관련업체들의 수요가 급증함으로 인해 매출이 두 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1부 정보 및 추가정보 1, 2, 3만을 가지고 볼 때 귀하께서는 PK(주)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판단을 다음에 주어진 백분율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존속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추가정보3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추가정보4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4] PK(주)는 안정적인 경상이익의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차기의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당기 말 현재 보유중인 토지 및 건물 등이 200억원 정도에 매각될 것이 확실시 되었으며, 차입금의 만기연장도 계획하고 있다.

제1부 정보 및 추가정보 1, 2, 3, 4만을 가지고 볼 때 귀하께서는 PK(주)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판단을 다음에 주어진 백분율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존속되지 않을것이 확실하다										존속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2. 정보의 재검토 판단

귀하께서 제2부에서 내리신 판단변화와는 상관없이 제1부의 일반정보와 재무제표정보, 제2부의 추가정보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경우 최종 판단 수정치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일반정보, 재무제표정보, 추가정보에 대해 재검토를 한 결과 PK(주)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판단을 다음에 주어진 백분율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존속되지 않을것이 확실하다										존속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